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ax Burden of Enterprise Influencing on  
Investment and Employment*

2007年 2月 25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

曹 銅 敏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金 濟 安

이 論文을 經濟學 博士學位 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0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

曹 銅 敏

# 曹銅敏의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吳 成 東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曹 正 基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金 正 植 印

委 員 木浦大學校 教授 牟 秀 原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金 濟 安 印

2006年 12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 목 차

## ABSTRACT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3
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	3
제 2 장 주요국의 법인세율 동향 .....	6
제 1 절 조세부담의 개요 .....	6
1. 조세의 의의 및 기능 .....	6
2. 조세지원제도의 의의 .....	7
3. 조세부담의 공정성 .....	8
제 2 절 우리나라 법인세율 정책동향 .....	9
1. 현행 법인세율 체계 .....	9
2. 법인세율 체계의 변천과정 .....	11
3. 법인세 감면제도 .....	14
제 3 절 주요국의 법인세율 정책동향 .....	21
1. 주요국의 현행 법인세율 체계 .....	21
2. 최근 법인세율 인하동향 .....	29
3. 시사점 .....	33
제 3 장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부담률과 유효법인세율에 대한 고찰 .....	35
제 1 절 조세부담률과 유효법인세율 .....	35
1. 조세부담률 .....	35
2. 유효법인세율 .....	38

제 2 절 유효법인세율 측정 .....	40
1. 측정방법 및 자료 .....	40
2. 납부액 기준 .....	44
3. 이연법인세 기준 .....	49
4. 5년 평균기준 .....	55
제 3 절 주요국과의 비교 .....	59
<b>제 4 장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b> .....	65
제 1 절 패널모형의 도입 .....	65
1. 패널자료모형의 구분 .....	66
2. 고정효과 모델 .....	69
3. 임의효과 모델 .....	72
4. 우도추정 .....	76
제 2 절 추정모형의 도입과 자료특성 분석 .....	78
제 3 절 법인세의 투자효과에 대한 패널분석 .....	83
1. 전체기업 .....	83
2. 산업별 .....	86
제 4 절 법인세의 고용효과에 대한 패널분석 .....	89
1. 전체기업 .....	89
2. 산업별 .....	94
제 5 절 시사점 .....	99
<b>제 5 장 요약 및 결론</b> .....	101

참 고 문 헌

부 록

<부표 1> 업종별 법인세부담 추이

<부표 2> 산업별 법인세부담 추이

## < 표 목 차 >

<표 2-1> 법인세 과세체계 .....	11
<표 2-2> 법인세율 체계의 변천 .....	13
<표 2-3> 투자지원제도 현황 .....	16
<표 2-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	18
<표 2-5>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20
<표 2-6> 미국의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 .....	22
<표 2-7> 영국의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 .....	23
<표 2-8> 프랑스의 종량최저한제 구조 .....	24
<표 2-9> 캐나다의 연도별 법인세율 인하 계획 .....	29
<표 2-10> 일본의 법인세율 변화 .....	30
<표 2-11>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 .....	32
<표 3-1> GDP 대비 조세부담률 .....	36
<표 3-2>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	36
<표 3-3>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 .....	37
<표 3-4> 연도별 업종별 자료의 분포 .....	42
<표 3-5> 업종별 법인 비중 .....	43
<표 3-6> 영업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	61
<표 3-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	62
<표 4-1> 자료의 변이계수 : 전체기간 .....	80
<표 4-2> 자료의 변이계수 : 2000-2004년 .....	82
<표 4-3>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패널분석결과 : 1991-2004년 .....	84
<표 4-4>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패널분석결과 : 1991-1999년 .....	85
<표 4-5>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패널분석결과 : 2000-2004년 .....	86
<표 4-6>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통신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패널분석 .....	87
<표 4-7> 광업, 어업, 축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패널분석 .....	88

<표 4-8>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패널분석 .....	89
<표 4-9> 조세부담과 고용의 패널분석 : 1991-2004 .....	90
<표 4-10> 고용의 분산분석표 : 개별 .....	91
<표 4-11> 고용의 분산분석표 : 시간 .....	91
<표 4-12> 조세부담과 고용의 패널분석 : 1991-1999년 .....	92
<표 4-13> 고용의 분산분석표 : 개별(1991-1999년) .....	92
<표 4-14> 고용의 분산분석표 : 시간(1991-1999년) .....	92
<표 4-15> 조세부담과 고용의 패널분석 : 2000-2004년 .....	93
<표 4-16> 고용의 분산분석표 : 개별(2000-2004년) .....	94
<표 4-17> 고용의 분산분석표 : 시간(2000-2004년) .....	94
<표 4-18>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통신업의 조세부담과 고용 패널분석 .....	95
<표 4-19>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통신업의 고용 분산분석표 : 개별 .....	95
<표 4-20>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통신업의 고용 분산분석표 : 시간 .....	96
<표 4-21> 광업, 어업, 축산업의 조세부담과 고용 패널분석 .....	96
<표 4-22> 광업, 어업, 축산업의 고용 분산분석표 : 개별 .....	97
<표 4-23> 광업, 어업, 축산업의 고용 분산분석표 : 시간 .....	97
<표 4-24>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업 조세부담과 고용의 패널분석 .....	98
<표 4-25>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의 고용 분산분석표 : 개별 .....	98
<표 4-26>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의 고용 분산분석표 : 시간 .....	99

## < 그림 목 차 >

<그림 2-1> G-7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	27
<그림 2-2> 아시아 주요국들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	28
<그림 2-3> G-7 국가들의 법인세율 변화 .....	31
<그림 2-4> 아시아 주요국들의 법인세율 변화 .....	28
<그림 3-1> 순이익 및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 추이 (평균값) .....	45
<그림 3-2> 순이익 및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 추이 (중간값) .....	45
<그림 3-3> 산업별 법인세율 (순이익, 중간값 기준) .....	46
<그림 3-4> 산업별 법인세율 (영업이익, 중간값 기준) .....	47
<그림 3-5>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세부담 격차 (중간값 기준) .....	47
<그림 3-6> 순이익 대비 세부담 (중간값 기준) .....	48
<그림 3-7> 화학제품 제조업과 전자부품의 세부담 격차 (중간값 기준) .....	49
<그림 3-8> 이연법인세율 추이-전체 (평균값) .....	50
<그림 3-9> 이연법인세율 추이-전체 (중간값) .....	51
<그림 3-10> 산업별 이연법인세율 추이 (순이익, 중간값 기준) .....	52
<그림 3-11> 산업별 이연법인세율 추이 (영업이익, 중간값 기준) .....	52
<그림 3-12>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세부담 격차 (중간값 기준) .....	53
<그림 3-13> 업종별 순이익대비 이연법인세 부담 (중간값 기준) .....	54
<그림 3-14> 화학제품 제조업과 전자부품의 이연법인세부담 격차 .....	54
<그림 3-15> 법인세율 추이 - 전체 (5년 평균) .....	56
<그림 3-16> 산업별 법인세율 추이 -5년평균 (순이익 기준) .....	57
<그림 3-17> 산업별 법인세율 추이 -5년평균 (영업이익 기준) .....	57
<그림 3-18> 순이익 대비 세부담 - 5년 평균 .....	58
<그림 3-19> 화학제품 제조업과 전자부품의 세부담 격차 - 5년 평균 .....	59
<그림 3-20> G-7국가 영업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	63
<그림 3-21> G-7국가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	63



<그림 3-22> 동아시아 국가 영업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 64  
<그림 3-23> 동아시아 국가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 64

# ABSTRACT

## *A Study on Tax Burden of Enterprise Influencing on Investment and Employment*

*Cho, Dong Min*

*Advisor : Prof. Kim, Jeh Ahn Ph. D.*

*Department of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Lowering the corporate tax rates has been discussed since early 2000s. The tendency of major advanced countries' reduced corporate tax such as Germany and Japan with other rival countries' low tax policy has caused this issue. Besides, the necessities of revitalizing the economy by increasing equipment investment and competi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to attract foreign capital support the argument of lowering the corporate tax rates. This study analyzed the corporate tax burdens of the Korean business sector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Based on Income Before Income Taxes (IBIT),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 of all business had dropped from the 22 % in 1991, slightly risen from the late 1990s, and reached 18 % in 2003. Based on Operating Income, it had remained 17% from 1991 to 1995, slightly fallen from 1996 to 1998, and increased to reach 18% in 2003.

A study on the tax burden among industries shows that the effective tax rate is relatively low in manufacture and service industry and high in wholesale, retail trade, real estate, leasing service, and the building industry. In case of service industry, it was relatively high in the early 1990s but the rate became similar to manufacture's. Wholesale and retail trade are burdened with 25~28% high tax of operating income and net income.

The difference among business in the manufacture field reveals that the building industry is burdened with higher tax than electronic parts business. This means that there was the large degree of tax credits to manufacture. The difference of the tax burden among business was over 10% in the early and mid 1990s but recently it decreased to 4~6%.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less difference is good or not but it can be used to arrange the difference of the tax burden among business in the future.

On foreign materials, G7 nations are burdened with the higher corporate tax than East Asian countries, which is over 5~10%. Taiwan is the lowest among East Asian countries. Although South Korea is lower than Japan, it is higher than other East Asian countries. Income Before Income Taxes (IBIT) of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 shows the similar result. Approximately, the average effective corporate rate of G7 nations except England and Japan continually has tend to fall since 1999 under the standard of Operating Income. On Net Income, except England, the rate is decreasing by and large. South korea seems to

slightly decrease under Net Income, but it remains consistently under Operating Income.

Considering the employment table, the additional table of Input-Output tables, the manufacturing industry forms greater part of production than the service business but the service industry places greater part of employment. Especially capital-intensive business develops noticeably and labor productivity improve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is means the less employment is needed to produce the same output. Supposing the constancy of technologies, the output should increase faster than labor productivity to employ more and grow together.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the business financial panel material of Korean Investors Service, the corporate tax burden is minus in case of investment. This means that the increase of the corporate tax burden diminishes investment. Especially businesses were influenced more heavily from 1991 to 1999 than from 2000 to 2004. There is gap in the influence of the tax burden on investment among business sectors. The resilience of the tax burden in the manufacturing, building, electricity, and communication business is higher than in the wholesale, retail, restaurant, and real estate business. There is no direct influence in the mining, fishing, and farming business. Apart from the level of the absolute tax burden, considering the relative tax burden of business among industry and business sectors, the degree of the present relative tax burden of business is regarded positively in the aspect of facilitating the equipment investment of busines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nswer the questions about the property of the present tax burden of business and the necessity of lowering the corporate tax rate. Easing the tax burden of business only impact on the equipment investment of business consistently. Thus at least

easing the tax burden of business can be helpful to promote investment and its effect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s of industry and business. In addition, it is needed to analyze individually the investment tax credits and exemption items by breaking down the tax burden of business to what kinds of easing the tax burden is the most effective.

The tax burden of business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employment. Especially it was influenced more heavily from 2000 to 2004 than from 1991 to 1999, which is the opposite with the investment. According to analysis done among business sectors, the resilience of mining, fishing, and farming is the highest. Also, the tax burden of manufacturing, building, electricity, and communication business influences employment. However, the corporate tax burden of wholesale, retail, restaurant, and real estate business is minus, which is too low (fixed effect pattern  $-0.0553$ , fixed effect pattern  $-0.0551$ ) to influence employment. investment. Thus lowering the corporate tax rate and the difference of the tax burden among industry and business does not seem to influence the employment.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논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산출을 증대시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믿음은 우선 법인세율의 인하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어느 정도 자극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논거가 유효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법인세율 인하 논쟁에서 법인세율이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인세율의 인하가 유효세율을 인하시켜 자본비용을 하락시킴으로서 투자를 증대시킨다고 본다. 또한 다국적기업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주변경쟁국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함으로써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Jorgenson, 1963; Hall & Jorgenson, 1967). 이에 반해, 법인세율인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인세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립적이어서 법인세율을 인하시켜도 자본비용이 하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로 인한 정부투자만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Eisner, 1978; Fazzari, 1993; Chirinko & Fazzari, 1993; Chirinko, Fazzari & Meyer, 1996). 또한, 우리나라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나 선진국 대비 법인세율이 낮고 여타 법인세 관련 조세지원제도가 많으며, 법인세율 인하는 단지 기업의 세후순이익의 증대분이 기업의 재무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이것이 투자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여서 정부지출 감소만큼 민간투자가 증가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법인세율 인하는 조세제도 단순화의 달성은 이를 수 있을지 모르나 기업의 투자 및 경기활성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윤재, 2004)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와 관련해서 유효세율 및 법인세제 개편과 관련되어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이만우, 1992; 전주성, 2001; 이인실, 2002; 김유찬, 2003; 안종석, 2003, 2004) 법인세와 기업투자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기존의 법인세와 기업투자 간의 연구는 거시자료를 이용한 법인세와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의 기업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접근의 실증분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세와 투자의 관계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과 거시적인 분석의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의 투자행태를 보다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조세부담과 투자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과정에서 조세부담의 역할을 고려해 본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세부담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더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의 세부담이 투자에 비해 고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명되지 않은 가설과 믿음의 존재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 저소득층의 사회보장기여금의 인하 등을 통한 기업의 고용비용 감소가 고용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이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미시 재무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별 조세부담의 차이와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나아가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코자 한다.

##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먼저 기업의 조세부담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의 검토를 하고, 다음으로 기업의 조세부담 및 유효법인세율측정과 패널분석을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기간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방법으로 진행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조세부담의 개요, 즉 우리나라 법인세율 정책동향 및 주요국의 법인세율 정책동향 등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기업의 조세부담과 유효법인세율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실증분석을 위한 논거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조세부담률과 유효법인세율, 조세부담을 납부액 기준, 이연법인세 기준, 5년평균 기준으로 하였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검토 분석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기업의 조세부담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 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기존의 법인세 관련 연구들은 주로 OECD 국가들을 비교하여 법인세의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거나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에서도 시계열 거시변수들을 이용하여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CGE모형)이나 부분균형적 접근으로 투자와 법인세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sup>1)</sup>

James(1994) 및 James & Matier(1995)는 신고전파 투자모형에 입각하여 실증

---

1) 이윤재·김경표,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를 촉진시키는가,” 『산업경제연구』, 제17권 제5호, 2004. pp.1711-1725.



연구를 하였는데 자본관련세(capital income tax) 인하가 노동관련세(labor income tax)나 소비관련세(sales tax)의 인하보다 경제성장률 증대에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본관련세의 감축은 자본비용 하락 및 세후 투자수익률 상승으로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는 노동생산성 및 실질임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노동공급에도 증대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Xu(1999)는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을 도입하여 자본관련세 비중이 높은 캐나다, 노동관련세 비중이 높은 프랑스, 자본 및 노동관련세 비중이 모두 높은 스웨덴 등 세 나라에 대하여 ① 자본관련세 일부를 소비관련세로 전환하는 경우 ② 자본관련세 일부를 노동관련세로 전환하는 경우 ③ 자본관련세 감축을 순수공공지출 축소와 연계시키는 경우 ④ 자본관련세 감축을 인적자본관련지출 축소와 연계시키는 경우 ⑤ 자본관련세 감축을 경상이전지출 축소와 연계시키는 경우 ⑥ 자본관련세 감축을 전반적인 재정지출 축소와 연계시키는 경우에 대한 정책모의실험 결과를 제시 하였다. 모든 경우에 GDP의 1%에 상응하는 규모의 자본관련세(2000년을 기준으로 할때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의 총 자본관련 세수의 12.3%, 14.7%, 14.4%에 해당함)를 감축시키며 줄어든 세수는 전부 여타 세목의 세수증대 또는 지출축소로 보전하여 재정수지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고 모의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를 분석해 보면 자본관련세 감축의 경제상승률 제고효과가 장기균형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제성장률에 0.0076~0.063%P로 대체로 작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록 크기가 작다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만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효과이다.

외국의 문헌조사 결과를 보면 1990년대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모두 법인세부담의 경감이 설비투자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분석의 기법이나 분석에 이용된 모형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는 상당히 다르다. 대표적인 것으로 OECD보고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명목 GDP의 1%에 상

응하는 규모만큼 법인세부담을 항구적으로 줄이고 그로 인한 세수감소분만큼 경상 이천지출을 축소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매년 0.03~0.0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동일한 방법의 법인세부담 경감에 의해 경제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연 0.02~0.09%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국내에서는 최근 김유찬(2003)이 신고전과 투자모형에 의한 법인세제 변동의 비교정태분석을, 이은실 등(2002) 및 전영준(2003)이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인하의 정책모의실험을 시도한 연구가 있었다. 한편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법인세 인하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으로는 한국은행(1998) 등이 있었다. OECD 회원국들에 대한 패널자료 분석 및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투자 함수 추정결과를 보면 법인세율과 내부유보 또는 주식발행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의 한계유효세율은 설비투자액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이러한 관계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더욱 뚜렷하였으며, 국내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의 재원을 내부유보 등 자기자본을 통해 조달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법인세율 변동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

2) 김진수·박형수·안종석,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pp.65-98.

3) 박기백·김진, “법인세 부담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4. 12. pp.15-19.

## 제 2 장 주요국의 법인세율 동향

### 제 1 절 조세부담의 개요

#### 1. 조세의 의의 및 기능

조세는 정부가 지출재원으로 사용할 국가의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보상 없이 민간부문, 즉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로 정의할 수 있다. 이같이 반대급부가 없는 조세를 징수하는 기본목적은 정부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조세의 국고수입목적이라한다.<sup>4)</sup>

한편 조세에는 재정수입을 징수한다는 본원적인 고유의 목적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국고적 기능 외에 조세는 여러 가지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책과제의 기능으로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관세, 자본형성의 촉진 및 억제에 위한 고율과세 등과 같이 특정의 경제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세율 또는 세율의 조정을 통해 특정경제활동을 권장 또는 규제한다. 둘째, 사회 정책적 기능으로서 소득분배의 형평을 높이기 위한 재산소득의 증과, 근로소득의 경과, 과세의 최저한도 설정, 누진세율구조, 고율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과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유인기능으로서 기업의 시설투자 등과 같은 특정경제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조세체계 하에서 비과세, 감면, 세율경감,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특별감가상각 등의 조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세 번째 기능은 기업의 경제활동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유인기능의 정도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가 결정되어 세후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기

4) 박태원, 『조세론』, 법문사, 2001. pp.50.

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기능은 효율과 공평이라는 조세원칙을 유지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효율의 원칙은 조세부담을 배분할 때 시장에서 달성되는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지 않도록 과세하는 것으로서 중립성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효율의 원칙은 시장경제가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요청되지만,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조세의 부담배분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요청된다. 효율의 원칙은 중립적 과세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세를 자원배분의 적정화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평의 원칙은 사회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개인간의 공정한 소득분배를 달성하려고 하지만, 응익과세와 응능과세가 목표로 하는 부담의 공평과 관련시켜서 공평의 원칙과 부담의 평등을 분리하여 고려해야 하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sup>5)</sup>

## 2. 조세지원제도의 의의

상기에 언급한 조세의 기능 중 세 번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산업이나 업종 또는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조세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과세를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세제 면에서 우대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세의 적극지원제도라고 하고 이와는 달리 대기업, 부실한 기업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 면에서 불리한 조항들을 두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생산업종 및 건실한 기업들에 대해 세제상 혜택이 가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도 조세의 소극지원제도로 조세지원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의 소극지원규정들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그 적용 여부를 선택할 소지가 없다는 점에서 적극지원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겠다.<sup>6)</sup>

5) 박태원, 『조세론』, 법문사, 2001. pp.185-200.

6) 이우택·이철재, 『조세법과 세무회계』, 서울 : 조세통람사, 1993. pp.13-16.

따라서 조세지원제도는 특정의 경제활동이나 특정산업에 부여되는 선별적인 감세장치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개방경제체제에 대응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세부담의 공평을 저해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침해하며, 누진과세구조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납세의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음에도 사후관리와 조정이 결여되어 공연히 세원만 잠식하게 되어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sup>7)</sup>

### 3. 조세부담의 공평성

공평성이란 공정성 또는 평등성이라는 개념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세부담의 공평한 배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세정의를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입안된 조세법의 집행과정에서 세법체계를 공평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적용하며,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는 것이 조세공평성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효법인세율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조세부담의 공평성 및 재정의 효율성과 관련된다. 조세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평성과 효율성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을 부여하는 효율성을 강조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서로 다른 세금을 부과하게됨으로 공평성에 어긋난다. 반대로, 공평성만을 강조하여 소득의 발생원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세를 부과하면,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육성할 수 없게 되어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세제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들은 공평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조세부담의 분포(Distribution of tax burden)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공평성과 효율성의 두 가지 요소는 상호 상충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

7) 윤진영·임주영,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3. pp.30-45.

그 예로 국가가 경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소비성 서비스업 대신 제조업이나 수출업 등과 같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공평성을 해치게 된다. 반대로, 공평성의 원칙만 강조하게 되면 소득의 발생원천 등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제조업이나 첨단산업과 같은 보다 효율적인 기업이나 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세정의는 배분적 정의의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는 공평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에 기초를 두면서도 수직적 공평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

## 제 2 절 우리나라 법인세율 정책동향

### 1. 현행 법인세율 체계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조직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법인세는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고 법인을 과세객체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국세, 직접세, 소득세 및 누진세의 특성을 갖고 있다.<sup>8)</sup>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은 그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 외국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

8) 광태원, 『조세론』, 법문사, 2001. pp.58.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면 된다.

한편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법인의 설립목적이 영리 추구가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록 설립 당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내용이 영리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하여 과세형평과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리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의도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과 같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은 신용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조합법인에 대해서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일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여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2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협동조합 등과 같은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단일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의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선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13%의 세율로,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과세하는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세율은 영리법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영리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비영리 외국법인도 국내원천소득 중에서 수익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대하여 12%의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표 2-1> 법인세 과세체계

과세 소득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각 사업연도 소득	내국 법인	일반법인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익금총액-손금총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1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조합법인 등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12%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액-국내 발생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상호면세의 외항소득	내국법인과 동일

자료 : 조세편람사, 『조세편람』, 2005

## 2. 법인세율 체계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는 1949년 11월 법인세법(법률 제62호, 1949. 11. 7)이 제정된 이후부터 독자적인 법안에 의해 과세되기 시작하였다. 법인세 도입 당시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일반법인의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었고 특별법인의 경우 20%의 경감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법인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법인세율 체계는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1975년 이래 4년간 비공개·비상장법인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금액 300만원과 500만원을 기준으로 20%, 30%, 40%의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었다. 다만 공개·상장법인과 비영리(학교)법인의 경우 500만원을 기준으로 20%와 27%의 2단계 세율



구조를 유지하였다. 1978년말 법인세법 개정시에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에서 중소기업에 한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5%, 25%, 3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였으며, 공개·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대주주 지분을 35%를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기준으로 25%와 3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1970년대의 이와 같은 법인세율 구조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소득계급과 더불어 법인유형에 따라 세율을 달리함으로써 세율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법인간 또는 소득계층간에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1980년말 법인세법 개정에서는 법인세율 구조를 25% 및 40%의 두 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과세표준금액을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인하하였다. 한편 1982년에는 비공개·비상장법인과 공개·상장법인간의 세율 격차를 폐지하는 등 법인세율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sup>9)</sup>. 특히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1981년에 22%와 38%로 인하하였던 세율을 1982년에는 다시 20%와 30%로 인하하였다.

1988년에는 과세표준금액이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세율은 여전히 20%와 30%의 2단계 구조로 1990년까지 적용되었다. 1990년말 세법개정에서는 방위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서 최고 세율이 34%로 인상되는 대신 과세표준금액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1993년말 세법개정에서는 같은 해 8월에 실시된 금융실명제로 인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유로 세율을 다시 18%와 32%로 인하하였다. 이어서 1994년에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대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율을 18%와 30%로 인하하였으며 1995년에는 다시 한 번 이를 16%와 28%로 인하하였다.

---

9) 공개·상장법인 중 대주주 지분율이 35% 이하인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5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우대조치를 시행하였다.

<표 2-2> 법인세율 체계의변천

개정 연도	비공개·비상장법인	공개·상장법인	비영리법인
1974	300만원 이하 20% 300만원 초과 30% 500만원 초과 40%	500만원 이하 20% 500만원 초과 27%	
1975	동일	동일	500만원 이하 20(15)% 500만원 초과 27%
1976	동일	500만원 이하 20(25)% 500만원 초과 27(33)%	동일
1978	300만원 이하 20(15)% 300만원 초과 30(25)% 500만원 초과 40(35)%	500만원 이하 20(25)% 500만원 초과 32(35)%	동일
1980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초과 40%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초과 33%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 27%
1981	5천만원 이하 22% 5천만원 초과 38%	5천만원 이하 22% 5천만원 초과 33%	동일 공공법인 5%
	<b>일반법인</b>	<b>비영리법인</b>	<b>공공법인</b>
1982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 30(33)%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 27%	5%
1988	8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초과 30(33)%	8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초과 27%	3억원 이하 10% 3억원 초과 15%
1990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34%		3억원 이하 17% 3억원 초과 25%
1993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32%		3억원 이하 18% 3억원 초과 25%
1994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30%		3억원 이하 18% 3억원 초과 25%
1995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3억원 이하 16% 3억원 초과 25%
1997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1998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2001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27%		
2005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2005.

또한 2005년 세법개정에서는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1억원 이하의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 3. 법인세 감면제도

각종 조세감면도 법인의 세부담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감면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세금감면 규모도 큰 상태이므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일반적인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 가. 법인 일반

일반적인 법인과 관련이 있는 조세지원은 그 성격에 따라 투자관련, 사업구조 조정 관련, 지방이전 관련 및 기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생산성향상 설비, 에너지절약 설비, 특정 설비, 연구인력개발 설비 등 모든 사업자의 특정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원과 투자대상을 구별하지 않지만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sup>10)</sup>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도 다수 존재하는데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및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과 같은 특례조항과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그것이다. 이외에 법인의 지방이전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로써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조세지원과 농공단지 및 제주도 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 입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마련되어

10) 안중석, “경제성장 및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조세연구원』, 2004. 5. pp.56-57.

있다. 한편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이나, 고용증대 및 해외파견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주어진다.

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2-3>과 같다.

우선 생산성 향상 설비의 대상으로는 제조업 공정 개선·자동화시설, 전자상거래 설비 등이 있으며 시설 고도화가 그 대상이다. 환경안전 설비의 경우 환경보전 시설, 청정생산시설, 유통사업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 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sup>11)</sup>. 이외에 에너지 절약 시설 및 중유 탈황과정을 통한 휘발유 등 생산시설, 중수도시설과 절수기기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목적으로 광업 및 제조업을 비롯하여 다수 업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 조세감면을 해주는 제도이다. 처음에는 제조업 및 광업의 시설투자만이 대상이었고 국산 및 외국산의 차별이 있었으나 이후 내·외산의 차별이 없어지고 대기업의 노후시설 대체투자에서 모든 사업용자산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업종도 비제조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먼저 가장 규모가 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보면, 당해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4년 지출액의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가지출액의 40%(중소기업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두 가지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대기업은 초과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7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과 관련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의 7%가 세액 공제된다(다만 수도권 지역은 제외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

11) 구 조특법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투자대상 시한을 2003년말에서 2006년말로 연장하고, 투자설비 내역을 변경하여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개정함.

<표 2-3> 투자지원제도 현황

구분	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생산성 향상 설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사업자</li> <li>* 제조업 공정개선·자동화시설, 제조업 첨단기술설비, ERP 설비, 전자상거래설비</li> </ul>	· 투자액의 5% 세액공제
환경 안전 설비 투자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법인의 2006. 12. 31까지 투자분</li> <li>* 환경보전시설, 청정생산시설,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 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li> </ul>	· 투자액의 3% 세액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사업자</li> <li>* 에너지 절약시설</li> <li>* 중유의 탈황과정을 통한 휘발유 등의 생산시설</li> <li>* 중수도시설·절수설비 및 절수기기</li> </ul>	· 적용시기별 투자액의 7%~15% 세액공제
사회간접자본	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간접자본 건설 법인</li> <li>* 도로, 항만, 공항, 전원설비</li> <li>* 초고속정보통신시설</li> <li>* 수자원 개발, 수도 및 하수종말처리</li> </ul>	· 투자액의 5% 손금산입
임시투자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업,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충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엔지니어링업, 정보처리·컴퓨터운용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li> <li>* 사업용자산</li> </ul>	· 투자액의 15%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법인의 2006. 12. 31까지 투자분</li> </ul>	· 평균발생액 40% 초과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법인의 2006. 12. 31까지 투자분</li> <li>*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사업용 자산</li> </ul>	· 투자액의 7% 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법인의 2006. 12. 31까지 투자분</li> <li>* 사원용임대주택,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li> </ul>	· 설비취득가액 7% 세액공제

주 : 외국인투자지원제도 제외  
 자료 : 조세편람사, 「조세편람」, 2005

수 있으며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3%가 일반적인 한도이다(기술집약·자본재·소재 및 부품 산업의 경우에는 5%). 이밖에 기술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술 취득과 이전에 대한 조세지원도 있다. 기술 취득의 경우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기술 이전의 경우 이전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50%를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외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기숙사 및 직장내 보육시설 등과 같은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이외 사회간접자본 건설법인의 특정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인 사회간접자본 준비금제도가 존재한다.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으로는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시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과세이연받은 금액의 재과세이연이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현물투자에 의한 법인설립에 대한 조세지원을 들 수 있다. 한편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나. 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경제 개방화에 따른 국민경제환경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자본재 도입시 관세 및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감면 등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이 가능한 감면대상 사업으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 사업, 외국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사업, 종전 수출자유지역 공장시설 설치,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사업, 경제자유구역·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사업 등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이다.<sup>12)</sup>

---

12) 안중석·최준욱,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성과 및 향후 운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8. pp.45-47.

<표2-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해 당 조 문
외 국 인 투자기업	· 소득세 · 법인세 감면 · 재산에 대한 취득, 등록, 재산,종토세 감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자본재도입시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	조특 121의2 ② 조특 121의 2④,⑤ 조특121의2 조특121의3
외국투자자	·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 감면	조특121의2 ③
고도기술도입	· 기술제공대가의 소득세 · 법인세 면제	조특121의6
공공차관의 대주	· 차관이자에 대한 조세 · 공과금 면제	공차법 8⑥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성과」, 2003. 8

#### 다. 중소기업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지원제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숫자가 많고, 고용 ·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창업, 자금조달, 사업경영 안정,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지방이전, 투자 등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sup>13)</sup>

먼저 창업지원의 경우를 보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조업 · 물류업 등의 특정 분야에서 국세와 지방세에 걸쳐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고, 법인세(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0% 감면되고 있다. 특히, 자금조달이 중요한 벤처기업을 위하여 창업투자회사, 투자자, 투자조합 등 자금 제공자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이 행해지고 있다. 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등이 비과세되고 있다. 또한 투자회사가 투 · 용자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투 · 용자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혜택도 주고 있다. 투자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하

13) 권순철, “중소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혁방안,” 『세무학연구』, 제7호, 2000. pp.21-30

는 제도도 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제조업은 물론 부가통신업 및 엔지니어링 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발생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접대비 손비인정의 경우 대기업의 1,200만원보다 더 높은 1,8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재무구조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도 다수 존재한다. 제조업·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을 폐지하고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자산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광업 등의 분야에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사이에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sup>14)</sup>

중소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도 다양하다. 제조업·건설업 등의 특정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투자준비금 설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신규 취득한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공해 방지, 근로복지 증진, 환경안전 등의 목적으로 설비 및 시설 투자를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기술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고, 보다 원활한 기술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에 적용되는 감면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중소기업에 주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은 연평균 발생액 초과분의 4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초과분의 50%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당해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15%세액 공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설비투자 및 준비금에 대한 조세지원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권 내의 공장 및 법인의 분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

---

14) 양재선·박철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2004. 6. pp.78-88.



이전에 따른 양도세 및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밖에 최저한세가 대기업은 15%인 반면 중소기업은 10%로 낮으며, 감면받지 못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표2-5>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구 분	지 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인력개발</li> <li>* 연구·인력개발준비금</li> <li>*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li> <li>* 설비투자 세액공제</li> <li>* 기술이전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집약적 5%, 기타 3% 손금산입</li> <li>- 연평균 발생액 초과분 50%, 비용의 15% 선택</li> <li>- 투자금액의 7%</li> <li>- 50% 세금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전</li> <li>*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이전</li> <li>* 법인본사 수도권 이외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 이외 지역</li> </ul> </li> <li>* 농공단지 입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금 불산입, 취득·등록세 면제</li> <li>3년간 소득·법인세 100%, 5년간 50%등</li> <li>- 익금 불산입</li> <li>취득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li> <li>- 법인세 50%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벤처기업</li> <li>* 창업중소기업</li> <li>* 창투자 관련 조세지원</li> <li>* 창업·벤처기업 지원(시설취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50% 감면</li> <li>- 주식양도차익, 양도소득세 등 비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li> <li>행사이익 연간 3000만원 한도 비과세</li> <li>투자금액 15% 소득공제</li> <li>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li> <li>-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종토세 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경영안정</li> <li>*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li> <li>* 대손충당금, 퇴직 급여충당금</li> <li>* 접대비 기준금액</li> <li>* 결손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과 업종에 따라 10(5)~15% 감면</li> <li>- 필요경비 계산 또는 손금산입</li> <li>- 중소기업의 한도가 높음</li> <li>- 결손금 환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li> <li>*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li> <li>* 중소기업간 통합</li> <li>* 현물출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금액의 30% 범위에서 손금산입</li> <li>- 양도차익 과세이연</li> <li>등록세·취득세·농특세 면제</li> <li>- 양도차익 과세이연</li> <li>등록세·취득세·증권거래세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투자</li> <li>* 투자준비금</li> <li>* 투자세액공제</li> <li>*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li> <li>* 특정 설비</li> <li>* 에너지 절약시설</li> <li>* 임시투자세액공제</li> <li>* 근로자 복지증진시설</li> <li>* 정보화지원사업</li> <li>* 환경안전설비 투자</li> <li>* 감가상각비 손금산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가액의 20% 손금산입</li> <li>- 투자금액의 3%세액공제</li> <li>- 투자금액의 7%세액공제</li> <li>- 투자금액의 3%</li> <li>- 투자금액의 7%</li> <li>- 일반법인의 경우와 동일</li> <li>- 투자금액의 7%</li> <li>- 설비투자지원금의 손금산입</li> <li>- 투자금액의 3%</li> <li>- 2004년6월까지의 고정자산취득분 감가상각비 손비계상 불문 손금산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li> <li>* 어음제도 개선</li> <li>* 최저한세 우대</li> <li>* 세액공제의 이월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금액의 0.3% 세액공제</li> <li>- 최저한세 10% 적용</li> <li>- 공제받지 못한 세금 이월하여 공제</li> </ul>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2003

### 제 3 절 주요국의 법인세율 정책동향

#### 1. 주요국의 현행 법인세율 체계

##### 가. 주요선진국

###### (1) 미국

미국의 경우 연방 내국세법과 재무부 기본통칙에 의해 미국 내에 설립된 내국 법인과 외국법인은 모두 법인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내국법인은 자신의

전세계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외국법인은 미국 영내에서의 사업과 관계된 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5년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 구조는 <표2-6>에서와 같이 과세소득구간에 따른 8 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최고 과세소득구간에 적용하는 법인세의 세율은 35%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연방법인세 외에도 대부분의 주정부마다 각자 별도의 세율을 정하여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sup>15)</sup>.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각 주마다 다양한데, 2005년 현재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는 미시간(Michigan)주로서 1.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이오와(Iowa)주는 가장 높은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 법인세율을 포함할 경우 실제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최고세율은 7.5%의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하는 뉴욕(NewYork)주를 기준으로 할 때는 42.5%, 전국 평균으로는 40.8%에 달하게 된다.<sup>16)</sup>

<표2-6> 미국의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 (2005년 기준)

(단위 : 달러, %)

과세소득	세율
50,000 이하	15
50,001 ~ 75,000	25
75,001 ~ 100,000	34
100,001 ~ 335,000	39
335,001 ~ 10,000,000	34
10,000,001 ~ 15,000,000	35
15,000,001 ~ 18,333,333	38
18,333,333 초과	35

자료 :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2005

15)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는 Nevada, South Dakota, Texas, Washington, Wyoming 등 5개 주다.

16) Eisner, R,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2005

(2) 영국

영국은 2001년 회계연도까지 10~30%의 3단계 누진세율 구조의 법인세 제도를 운용하여 왔으나, 2002년 회계연도부터 1만파운드 이하의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1만파운드를 초과하는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4단계 소득구간별로 과세하는 구조의 법인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과세소득구간 및 세율은 아래의 <표 2-7>과 같다. 현재 최고 과세소득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의 세율은 30%이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 2-7>에 제시된 세율이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조세부담이 된다.

<표2-7> 영국의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 (2005년 기준)

(단위: 파운드, %)

과세소득	세율
10,000 이하	0
10,001 ~ 50,000	23.75
50,001 ~ 300,000	19
300,001 ~ 1,500,000	32.75
1,500,000 초과	30

자료 :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5

(3) 프랑스

프랑스는 일반적인 OECD 회원국들과는 달리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하는 법인의 영업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법인의 영업소득과 이에 귀속되는 손금은 과세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2005년 현재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33.33%의 단일세율에 의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율에 대한 3%의 부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법인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세를 포함한 법

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은 34.33%이다.

한편 프랑스는 75%이상의 지분이 개인주주에 의해 소유되고 연간매출액이 763만 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처음 38,120유로까지의 소득에 대해 1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연간 매출액이 763만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3%의 부가세 외에 추가적으로 법인세액의 3.3%에 해당하는 법인이익 사회세(social surcharge)가 부과되므로 대기업의 과세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최종적인 법인세율은 35.46%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법인의 연간 총거래액에 따른 종량최저한제(annual minimum lump-sum tax)를 적용<sup>17)</sup>하고 있는데, 총거래액에 따른 최저한세액은 아래의 <표2-8>과 같다.

<표2-8> 프랑스의 종량최저한제 구조 (2005년 기준)

(단위 : 유로, %)

과세소득	세율
150,000 이하	750
150,001 ~ 300,000	1,125
300,001 ~ 750,000	1,575
750,001 ~ 1,500,000	2,175
1,500,001 ~ 7,500,000	3,750
7,500,001 ~ 15,000,000	15,000
15,000,01 ~ 75,000,000	18,750
75,000,000 초과	30,000

자료 :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5

#### (4) 독일

독일의 경우 2000년도까지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40%의 단일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2001/2002년 회계연도부터 법인세율을 25%로 대폭 낮추었으며, 이러한 법인세율에 대해 추가적으로 5.5%의 공동부가세(solidarity surcharge)

17)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5

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최종적인 연방정부 법인세율은 26.38%가 된다. 그러나 『Flood Victims Solidarity Law』의 개정으로 인해 2003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방정부 법인세율을 25%에서 26.5%로 인상하였다. 따라서 2005년도의 경우 5.5%의 공동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최종적인 법인세율은 27.96%가 된다.

한편 독일은 법인의 사업소득(business income)에 대해 지방정부가 영업세(business tax)를 부과하고 있다. 영업세율은 각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 19.6%에 달한다. 영업세는 기본 연방세율과 승수(multiplier)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선 과세대상 법인소득에 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기본납세금액을 결정하고 이 기본납세금액에다 승수를 곱하여 실제 영업세액을 산출한다. 승수는 각 지역의 재정상태에 따라 다르며, 최고 수준은 490%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2년도의 경우를 보면 베를린은 410%, 프랑크푸르트는 490%, 함부르크는 470%, 뮌헨은 490%이다. 영업세는 법인세액 산출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액을 감안한 최종 법인세율은 평균 38.6%이다.<sup>18)</sup>

#### (5) 일 본

일본의 현행 법인세율은 30%이며,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엔 이하의 소득에 대해 22%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법인소득에 대하여 지방세인 사업체가 9.6%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으며, 법인세액의 17.3%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인사업세는 법인세액 계산 시 손금산입 되므로 지방세(법인사업세+주민세)를 포함한 최종 세율은 40.87%이다.

#### (6) 캐나다

캐나다는 2000년까지 28%의 일반 연방법인세율을 유지하여 왔으며 법인세율에 대한 4%의 부가세(surtax)를 추가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부가세를 포함한 연방정부

---

18) OECD, Taxing Profits in a Global Economy, Paris: OECD, 2005

법인세율은 29.12%에 달하였다. 그러나 캐나다는 2000년 이후부터 법인세율 인하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일반 연방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2003년부터는 2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연방법인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는 여전히 2000년 기준 연방법인세율에 대해 4%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게 되면 2005년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24.12%에 달하게 된다. 캐나다는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실질적인 법인세율을 23%로 낮추는 것과 아울러 과세소득 20만~30만 캐나다달러(CAD)의 소규모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1%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또한 각 주정부가 독자적인 세율로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평균 세율은 12.5%에 달한다. 따라서 각 주마다 연방정부 법인세, 부가세 및 지방정부 법인세를 포함한 총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38.16~46.62%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최종세율이 가장 낮은 주는 퀘벡(Quebec)주로 38.16%이며,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의 경우 42.62%, 온타리오(Ontario)주의 최종 세율은 41.62%이다.<sup>19)</sup>

#### (7) 이탈리아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경우 2005년 34%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1년까지의 37%에 달하는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2002년도에 36%, 2003년도에 34%로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또한 이탈리아는 이와 같은 연방정부 법인세 이외에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 법인세의 표준세율은 4.25%이나 각 지방정부는 1%포인트 내에서 세율을 증감할 수 있다.<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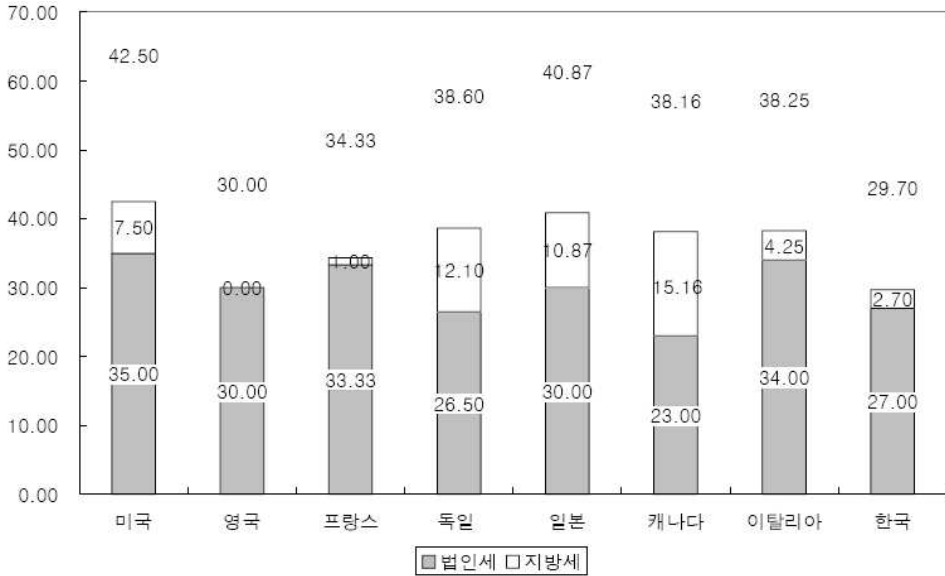
---

19) Lee, young and Rorer H. Gorden, 『Tax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mimeo, 2005

20)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5

<그림2-1> G-7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단위 : %)



주 : 미국은 뉴욕주, 독일은 전국 평균치, 캐나다는 퀘벡주를 기준으로 함.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2003

## 나. 아시아 주요국

중국의 법인세율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33%이다. 이 중 과세소득의 3%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은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지방 정부에 배분하게 됨으로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국세로서의 법인세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지방세까지 포함한 최종 세율이 33%인 것이다.<sup>21)</sup>

홍콩의 경우에는 1997/98년 회계연도까지 16.5%의 법인세율을 유지하였으나 1998/99년 회계연도부터 법인세율은 16%로 인하하였다가 최근의 범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과는 달리 2003/04년 회계연도부터는 17.5%로 법인세율을 인상하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최신 중국조세제도 변화추이』, 2004, pp.78-80.



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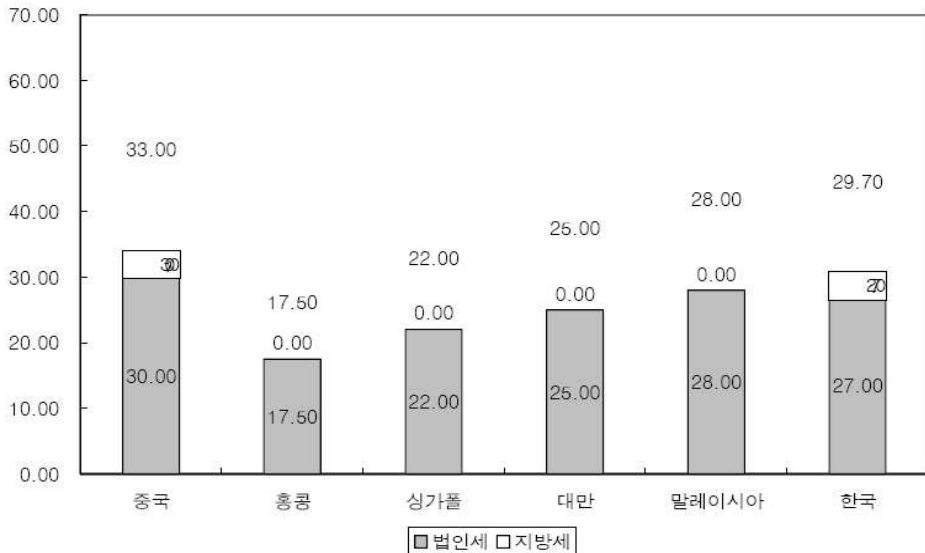
싱가포르의 경우 점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여 왔으며, 2005년 22%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sup>22)</sup>

대만의 영리사업소득세(profit-seeking enterprise income tax)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법인세 제도와는 다르게 기업, 개인사업자, 조합 및 여러 형태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과세구간 및 세율구조를 보면 우선 연간 과세소득이 5만 NT달러 이하인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10만NT달러 이하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1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의 경우 28%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sup>23)</sup>

<그림2-2> 아시아 주요국들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단위 : %)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2003

22) 한국수출입은행, 『싱가포르 투자가이드』, 2005. pp.31-39.

23) 말레이시아 산업개발국, www.mida.gov.my

## 2. 최근 법인세율 인하동향

### 가. G-7 국가

미국의 경우 2001년 폴 오닐 장관의 법인세 폐지검토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 구조는 1986년 세제개편 이후 2005년까지 변함이 없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35%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최근의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국가중 하나이다. 캐나다는 2000년까지 38%의 높은 법인세율을 설정하고 캐나다 내에서의 법인소득에 대해 10%의 리베이트(rebate)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연방법인세율을 28%로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표 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하는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감안할 때 2003년도 기준 일반 연방법인세율은 23%로 2000년에 비해 5%포인트 낮아졌으며 2004년에는 21%로 낮추었다.

<표 2-9> 캐나다의 연도별 법인세율 인하 계획

(단위 : %)

연 도	일반연방 법인세율
2000	28
2001	27
2002	25
2003	23
2004	21

자료: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5

독일의 경우 1998년까지 45%의 높은 연방정부 법인세율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독일은 1999년부터 새로운 법인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인세율을 40%로 낮추었으며, 2001년부터는 기존의 법인세율을 대폭적으로 경감한 25%의 연방정부 법

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3년도의 경우에는 『Flood Victims Solidarity Law』의 개정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방정부 법인세율을 25%에서 26.5%로 1.5%포인트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5.5%의 공동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2002년도의 연방정부 법인세율은 26.38%였으나 2003년도에는 27.96%로 상승하였다.

한편 독일의 이와 같은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특별한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30%인데, 2000년 이후 이와 같은 세율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법인세율에 대한 부가세나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법인세율 수준이 낮은 편이다. 또한 33.33%(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34.33%)의 단일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프랑스 역시 2000년 이후 법인세율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는 2001년도에 37%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2002년도에는 36%로 인하하고 다시 2003년도부터는 3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sup>24)</sup>

일본은 <표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에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조치를 단행하였다. 1984년에 무려 42%에 달하던 법인세율은 단계적인 인하조치에 따라 1988년에 37.5%로 낮아졌으며 1989년에는 다시 34.5%로 낮아졌다. 이후 1990년대에도 34.5%(경감세율 25%)의 법인세율은 계속 유지되었으나 1998년 4월에 발표된 종합경제대책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항구적 감세조치로 법인세율을 30%(경감세율22%)로 인하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2-10> 일본의 법인세율 변화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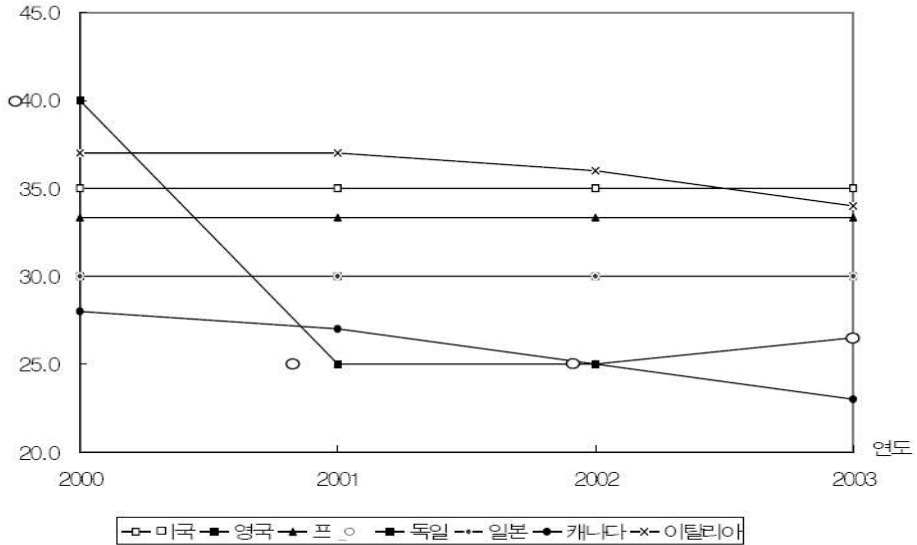
연도	1984~	1987~	1988~	1989~	1999~
법인세율	42	40	37.5	34.5	30

자료: 일본 재무성 (<http://mof.go.jp>)

24) 한국조세연구원, “OECD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재정포럼』 통권65호, 2005.11. pp.45-51.

<그림2-3> G-7 국가들의 법인세율 변화

(단위: %)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2003

## 나. 아시아 주요국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중에서는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인하조치가 두드러진다. 싱가포르는 1986년까지 40%라는 매우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 지속적인 세율인하를 단행하여 왔다. 1987년에 법인세율을 33%로 낮춘 이후 단계적인 인하 과정을 거쳐 1993년에는 법인세율을 30%로, 1997년에는 26%로 인하하였다. 그 이후 몇 년간 26%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던 싱가포르는 다시 2001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현재 법인세율은 20%이다.<sup>25)</sup>

25) 한국수출입은행, 「싱가포르 투자가이드」, 2005. pp.31-39.

<표2-11>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

(단위 : %)

연 도	1990	1991	1993	1994	1997	2001	2002	2003	2005
법인세율	42	40	37.5	34.5	30	25.5	24.5	2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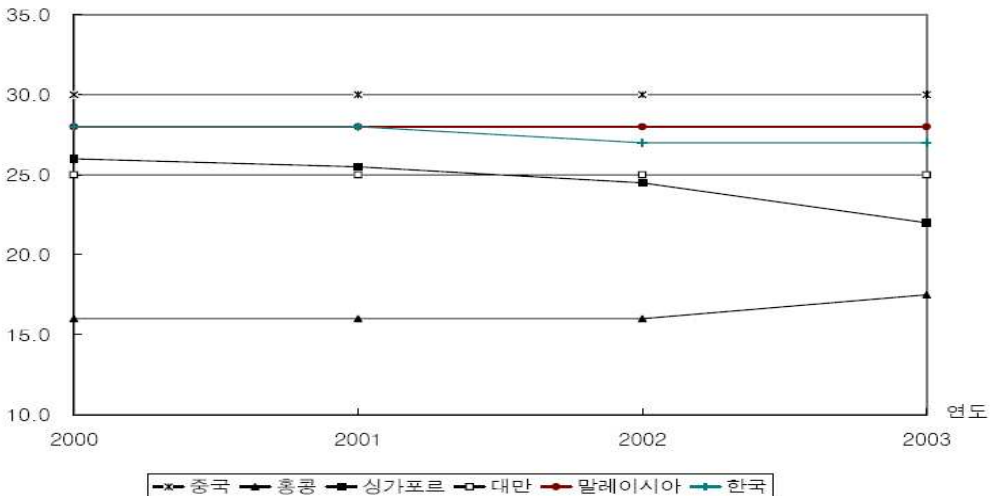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http://iras.gov.sg>)

그러나 대만 및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각각 25% 및 28%의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30%(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33%)의 법인세율을 고수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1997/98년 회계연도까지 16.5%의 법인세율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0.5%포인트 낮추어 2002/03년 회계연도까지 16%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2003/04년 회계연도부터는 최근의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과 반대로 법인세율을 17.5%로 1.5%포인트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2-4> 아시아 주요국의 법인세율 변화

(단위 : %)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2003

### 3. 시사점

G-7 국가 등 OECD 회원국과 아시아 주요국가의 법인세부담은 명목세율을 기준으로 볼 때 최근 대체로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본수익에 대한 자국의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국제자본시장에서 보다 많은 자본을 유입하려는 노력이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즉, 한편으로는 법인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각국의 법인세율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6)</sup>

전반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 가운데서 두 개의 뚜렷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 법인세율 30%를 하한으로 지속적인 세율인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빠른 대응을 통해 이미 30%수준에 근접한 영국(30%)과 프랑스(34.3%)는 최근에는 세율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명목세율이 40% 수준에 이르거나 그 이상으로 높았던 캐나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는 최근 명목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25%이하의 명목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보다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과감한 조세지원 정책으로 유효세율을 크게 낮추고 있다. 지방세를 포함하여 명목 법인세율이 33%에 달하는 중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지역이나 투자업종에 따라 15~2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선도기업(pioneer enterprise)에 대해 과감한 조세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 성격의 역외거래지역(라부앙)을 설정하여 외국자본 유치에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6) 김진수·박형수·안종석,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이와 같이 양분된 법인세율 인하 추세는 법인세율 인하 논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경쟁국에 비해 세부담을 낮게 설정하여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재고하려는 노력은 명목세율 인하 경쟁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기업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감가상각제도등에 의해서도 달라지므로 이들을 모두 고려한 유효세부담을 변화시키는 것이 국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효세부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국가의 정책은 명목세부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만약 조세지원제도가 크게 다른 국가들 사이에 명목세율을 수렴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자원배분의 왜곡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쟁국들간에 조세지원제도가 유사하다면 명목세율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운영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둘째,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경제환경이 유사한 국가들간의 경쟁이다. 기업의 투자결정에서 세부담의 격차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대별되는 경제환경의 격차를 압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선진국끼리 경쟁을 통해 조세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는 경향을 보이며, 개발도상국들은 개발도상국끼리 유사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명목세율이 25%(지방세 미포함)로 선진국보다는 낮으나 주변의 개발도상국들보다는 상당히 높다. 명목세율이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 세부담을 비교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나, 명목세율도 국가의 기업정책에 대한 신호(signal)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유사한 조세지원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의 세부담 격차를 대변할 수 있으므로 국제자본 유치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군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국가군의 정책동향을 참조하여 우리의 정책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제 3 장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부담률과 유효법인세율에 대한 고찰

### 제 1 절 조세부담률과 유효법인세율

#### 1.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GDP대비 납세액으로 정의된다. 조세부담률은 보통 전체 세수를 기준으로 한 GDP 대비 비중을 의미하지만 개별 세목의 GDP 대비 비중을 나타내기도 한다.<sup>27)</sup> 우리나라 GDP 대비 조세부담률을 살펴보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를 기준으로 볼 때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999년에 19.5%, 2000년에 19.1%, 2001년에 19.5%, 2002년에 21.8%, 2003년에 22.2%, 그리고 2004년에는 22.7%를 기록하였다. 조세부담률이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은 1999년에 2.1%, 2000년에 2.4%, 2001년에 1.9%, 2002년에 3.4%, 2003년에 3.1%, 그리고 2004년에는 3.2%를 기록 하였다. GDP 대비 조세부담률과 마찬가지로 조세부담률이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의 조세부담률 증가의 약 1/3 정도를 법인세 수입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조세부담률을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를 기준으로 볼 때 2004년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2.2%로 OECD 30개국 조세부담률의 평균인 27.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7) 박태원, 『조세론』, 법문사, 2001, pp.86



<표 3-1> GDP 대비 조세부담률

(단위 :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법인세	94,247 (2.1)	107,758 (2.4)	93,654 (1.9)	178,784 (3.4)	169,751 (3.1)	192,432 (3.2)
국세	699,277 (15.4)	677,977 (15.3)	756,580 (15.7)	929,347 (17.8)	957,928 (17.4)	1,039,678 (17.4)
지방세	184,057 (4.1)	171,497 (3.8)	185,862 (3.9)	206,006 (4.0)	266,649 (4.8)	315,257 (5.3)
조세계	883,334 (19.5)	849,474 (19.1)	942,442 (19.5)	1,135,353 (21.8)	1,224,577 (22.2)	1,354,935 (22.7)
명목 GDP	4,532,764	4,443,665	4,827,442	5,219,592	5,515,575	5,963,812

주 : ( )안은 명목 GDP대비 비율,  
자료 :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5

<표 3-2>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덴마크	47.8	48.6	49.3	47.2	47.6
스웨덴	35.1	36.8	39.6	39.5	36.1
노르웨이	31.5	33.3	30.5	30.3	34.4
뉴질랜드	37.0	34.8	33.9	33.8	33.8
핀란드	32.7	34.5	35.1	35.2	33.8
아이슬란드	29.3	31.5	34.2	35.3	33.6
벨기에	29.9	31.3	31.0	31.6	31.4
영국	28.7	30.5	30.0	31.0	31.0
오스트리아	26.5	29.2	28.9	28.5	30.6
호주	29.7	30.8	30.8	31.5	30.1
이탈리아	28.2	30.0	30.9	30.0	29.9
캐나다	30.6	31.4	31.0	30.6	29.9
룩셈부르크	31.1	29.6	29.9	30.2	29.6
터키	19.8	24.3	25.5	27.7	29.3
프랑스	25.2	28.8	29.3	28.9	28.6
헝가리	27.3	25.8	27.3	27.6	27.5
아일랜드	28.1	27.7	26.9	27.0	25.6
그리스	21.9	24.4	25.6	26.7	25.5
네덜란드	24.4	24.7	25.2	25.1	25.3
포르투갈	23.7	24.8	25.3	25.5	24.5
폴란드	27.6	25.5	25.2	24.3	23.5
스위스	20.8	22.3	22.2	23.6	22.8
스페인	21.0	22.0	22.8	22.8	22.6
독일	23.3	22.1	22.9	23.0	22.2
<b>한국</b>	<b>19.1</b>	<b>19.1</b>	<b>19.5</b>	<b>21.8</b>	<b>22.2</b>
미국	20.7	22.0	22.0	22.8	21.8
체코공화국	23.7	21.3	21.9	21.9	21.3
슬로바키아	22.0	21.9	20.6	20.5	17.9
일본	17.6	17.0	16.6	17.6	17.0
멕시코	13.9	13.7	14.3	15.4	15.7
<b>OECD 평균</b>	<b>26.61</b>	<b>27.32</b>	<b>27.61</b>	<b>27.90</b>	<b>27.50</b>

주 :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총세수의 명목GDP 대비 비율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4, 2005

OECD 회원국 중에서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서 47.6%였으며,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로서 15.7% 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OECD 30개국 중에서 25번째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표3-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볼때 2004년의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3.3%로 OECD 30개국 법인세부담률의 평균인 3.5%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은 OECD 30개국 중에서 17번째를 기록하였다.

<표 3-3>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덴마크	2.0	2.8	3.0	2.4	3.1
스웨덴	2.8	2.9	3.0	3.9	2.9
노르웨이	3.8	4.2	3.1	5.9	9.4
뉴질랜드	4.4	3.8	3.8	4.0	3.8
핀란드	1.8	4.3	4.4	5.6	4.9
아이슬란드	1.0	1.2	1.8	1.9	1.2
벨기에	3.0	3.8	3.6	3.6	3.6
영국	3.3	4.0	3.7	3.6	3.5
오스트리아	1.5	2.1	1.8	2.0	3.1
호주	4.4	4.9	4.9	6.5	4.5
이탈리아	3.6	3.0	3.3	3.2	3.6
캐나다	2.9	3.6	3.6	4.0	3.5
룩셈부르크	7.5	7.9	7.0	7.2	7.5
터 키	1.5	1.7	2.4	2.3	2.4
프랑스	2.1	2.7	3.0	3.1	3.4
헝가리	1.9	2.2	2.3	2.2	2.4
아일랜드	2.8	3.4	3.8	3.8	3.6
그리스	2.0	3.0	3.2	4.4	3.4
네덜란드	3.1	4.3	4.2	4.2	4.1
포르투갈	2.6	3.9	4.0	4.2	3.6
폴란드	3.0	2.8	2.6	2.6	2.0
스위스	1.9	2.1	2.5	2.8	3.1
스페인	1.8	2.5	2.8	3.0	2.8
독 일	1.1	1.6	1.8	1.8	0.6
<b>한국</b>	<b>2.5</b>	<b>2.6</b>	<b>2.1</b>	<b>3.7</b>	<b>3.3</b>
미국	2.6	2.6	2.4	2.5	1.9
체코공화국	4.9	3.7	3.7	3.8	4.2
슬로바키아	-	3.5	2.8	2.9	2.2
일본	4.2	3.7	3.4	3.6	3.5
멕시코	-	-	-	-	-
<b>OECD 평균</b>	<b>2.9</b>	<b>3.3</b>	<b>3.2</b>	<b>3.6</b>	<b>3.5</b>

주 : 국세 및 지방세를 포함하는 법인세의 명목GDP 대비 비율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4, 2005

## 2. 유효법인세율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조세부담능력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기업의 조세부담정도를 측정할 때 유용한 기법으로 조세부담의 배분 및 왜곡정도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특히 조세부담정도와 효과를 측정하는 공평성지표로 많이 사용되며 상대적인 조세부담을 비교함으로써 측정되고, 법인세를 기업의 조세부담능력으로 나누어 파악한다.<sup>28)</sup>

유효법인세율은 세법이 정하는 법정세율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세차감전 이익에 대한 실제납세액을 소득액 또는 이익으로 나눔으로써 도출된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분포와 기존 투자의 현금흐름을 측정하는데 적절하며, 관측된 자료로부터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의 투자형태를 분석하는데 유용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는 조세부담능력에 대한 대응치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세무조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법인세를 평균화하기 위해 이익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나 세무조정사항을 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됨으로 유효법인세율 산정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만을 대응치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그리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동시에 사용하여 대응치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결과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연구들에서 법인세부담 측정치로 유효법인세율을 사용하는데 대해 신뢰성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Wilkie<sup>29)</sup>은 기업간, 산업간 및 기간별 유효법인세율의 차이가 조세혜택가설로 설명될 수 없으며, 조세혜택과 세전 이익의 함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

28) 광태원, 『조세론』, 법문사, 2001, pp.371

29) P.J. WILKIE, "Corporate Average Effective Tax Rates and Inferences about Relative Tax Preference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0, 1988(Fall), pp75-88

유효세율은 계산방법에 따라 평균유효세율과 한계유효세율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평균유효세율은 일반적으로 이익에 대한 납부된 세액의 비율로 정의되며, 한계유효세율은 조세로 납부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 투자로부터의 기대수익률로 정의된다. 한계유효세율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자산에 투자할 유인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반면 평균유효세율은 조세부담의 분포와 기존 투자의 현금흐름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유효세율은 이익측정치에 따라 경제적 법인세율, 매출총이익 법인세율, 회계이익 법인세율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경제적 법인세율은 일정기간의 기업의 납부세액을 당해 기간의 경제적 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무제표에 보고된 당기 법인세는 납부된 법인세액의 대리변수로 가정한다. 경제적 이익은 조세혜택과 과세소득의 합으로 측정된다. 조세혜택은 세법 규정에 따른 각종 비과세소득, 감면소득, 세액공제의 합으로 정의된다.

매출총이익 법인세율은 일정 기간의 매출총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의 비율로 측정한다. 분모에는 영업현금흐름이 적용되는데, 이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발생주의 회계절차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sup>30)</sup> 영업현금흐름은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차이, 즉 매출총이익 또는 판매비 및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에 의하여 측정한다. 이러한 영업현금흐름 측정치는 상이한 자본구조에 기인하는 산업간의 유효세율을 측정치의 체계적인 차이를 배제하게 된다.

회계이익법인세율은 일정기간의 법인세차감전 회계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의 비율로 정의되며, 법인세차감전 회계이익은 기업이 재무제표에 보고한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이다.

---

30) R. Hagarman and M. Zmijewski, "An Income Strategy Approach to the Positive Theory of Accounting Standard Setting Choice," *Journal of Economics* 3, 1981 (August), pp.129-149

## 제 2 절 유효법인세율 측정

### 1. 측정방법 및 자료

#### 가. 측정방법

만약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와 납세자료를 갖고 있다면 보다 정확한 유효법인세율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유효법인세율의 변화에 따른 기업활동의 변화나 정부정책의 효율성 등을 연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자료는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인의 세부담을 측정하는 기존의 연구는 거시자료를 이용하거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법인의 평균유효세율을 측정한다. 비록 한계유효세율이 투자에 대한 조세유인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자료의 한계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전주성(2004)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처럼 다양하고 대규모의 조세감면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형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보다 기업의 특성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개별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평균유효세율은 세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분자와 분모에 해당하는 다양한 개념들 중에서 가장 이론적으로 평균유효세율에 부합하면서도 자료가 존재하는 방법을 골라야 한다. 우선 법인의 경제적 이익의 변수로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년평균, 영업이익의 세가지를 사용한다. 먼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법인의 총체적인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이를 소득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세무목적으로 각종 손금과 익금의 조정을 통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세무조정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무자료인 기업의 사업연도소득이나 과세표준에 비해 소득을 더 정확히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변동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5년간의 수치를 평균한다. 이 경우

에는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세액의 변동이 있으므로 세액도 5년 평균치를 사용한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이자비용등 비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손실)이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영업이익도 소득의 지표로 보고 세부담을 계산한다.

법인세 부담은 법인세 비용에서 이연법인세를 차감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즉, 1999년부터 시행되는 이연법인세제도를 상정하여 이연법인세대와 이연법인세차를 가감하여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을 계산한다. 주민세를 포함한 광의의 법인세부담을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전주성(2004)의 경우처럼 준조세를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세금과 공과, 지급수수료, 기부금을 총괄하는 법인지급 부담을 생각할 수도 있다. 법인세의 개념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법인세 비용이지만 1999년부터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납부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감한 법인세 비용을 모두 사용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세액은 재무제표에 나타난 자료이므로 법인세 이외에 법인세특별부가세, 주민세 등이 포함된다.

## 나. 자 료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의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일부 변수를 추출해서 사용하였다. 포함되는 범위는 상장법인이며, 사용연도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어업, 서비스업 및 금융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조업 등에 대한 분석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을 포함한 분석을 실시한다.

법인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차감전순익, 영업이익 등을 추출하였다. 세금자료는 법인세 비용항목으로 법인세, 주민세 등을 포함한 법인의 세액이다. 정확한 법인세 부담을 알기 위하여 당년도 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자료 모두 추출하였다. 이연법인세제도가 1999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재무제표상에서 법인세 비용으로 표시되는 항목의 내용이 달라졌다. 즉, 1999년 이전에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법인세등의 항목이

법인의 납부세액이었으나 1999년 이후에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기업회계사의 수익(비용)과 세법상의 수익(비용)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연법인세를 도입 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아닌 실제 발생한 법인세가 손익계산서상에 법인세비용으로 표시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999년도 이후의 법인세비용이 실질적인 기업의 세부담액으로 보아 1999년 이후만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 한다.

<표3-4>연도별 업종별 자료의 분포

(단위 : 개, %)

연도별	빈도수	백분율	업종별	빈도수	백분율
1991	686	6.93	어업,광업	84	0.85
1992	688	6.95	화학, 제약	1,498	15.13
1993	693	7.00	의료, 정밀	95	0.96
1994	692	6.99	제조업	2,520	25.45
1995	713	7.20	전기,가스등	126	1.27
1996	725	7.32	건설업	518	5.23
1997	764	7.72	도소매업	658	6.65
1998	776	7.84	숙박,음식	504	5.09
1999	732	7.38	운수업	784	7.92
2000	710	7.17	통신업	854	8.63
2001	694	7.01	금융,보험	728	7.35
2002	669	6.76	부동산,임대	126	1.27
2003	684	6.91	의복,가죽등	518	5.23
2004	675	6.82	목재, 출판	336	3.39
합계	9,901	100	오락,문화등	64	0.65
			서비스업	488	4.93
			합 계	9,901	100

그 외에도 감가상각비, 인건비, 이자비용, 특별이익, 매출액 등의 변수를 추출하였다. 감가상각비와 인건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관리비에 포함되는 것 이외에 제조원가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및 노무비가 있다. 예를 들어, 장치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마모되는 감가상각 부분은 제조원가에 포함시키므로 손익계산서상의 판

매관리비의 감가상각비만을 살펴볼 경우 상당히 작게 나타날 여지가 존재한다.

<표3-5> 업종별 법인 비중

(단위 : %)

	광업	제조업	전기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	운수
1991	0.7	32.9	8.1	13.9	15.9	2.1	0.6	5.1
1992	0.7	31.1	8.0	16.4	16.6	2.4	0.6	4.8
1993	0.8	31.6	8.1	15.5	17.5	2.2	0.6	4.6
1994	0.8	31.0	8.0	16.4	17.3	2.1	0.6	4.3
1995	0.7	30.5	8.0	16.7	17.8	2.1	0.5	4.2
1996	0.6	30.0	8.0	16.5	16.2	2.0	0.6	4.1
1997	0.6	29.1	8.1	16.3	18.7	2.0	0.6	4.0
1998	0.6	28.7	6.1	16.6	19.4	2.0	0.6	4.0
1999	0.6	28.9	6.1	16.6	18.9	2.3	0.7	3.8
2000	0.5	29.0	8.1	15.3	17.5	2.3	0.7	3.9
2001	0.4	27.4	8.1	15.9	16.4	2.4	0.6	6.6
2002	0.3	27.1	7.1	16.5	18.0	2.4	0.6	6.3
2003	0.3	27.0	8.5	16.0	16.5	2.9	0.7	6.1
2004	0.3	26.9	7.3	16.5	17.0	2.8	0.9	6.4
	부동산업	서비스업	어업	산림업	축산업	의료업	기타산업	계
1991	3.2	15.3	0.3	0.1	0.2	0.3	1.4	100.0
1992	2.9	14.5	0.2	0.1	0.1	0.3	1.3	100.0
1993	2.7	14.4	0.2	0.1	0.1	0.3	1.4	100.0
1994	2.6	14.4	0.2	0.0	0.2	0.2	1.8	100.0
1995	2.4	14.3	0.3	0.1	0.3	0.2	1.9	100.0
1996	2.3	14.9	0.2	0.1	0.3	0.3	2.0	100.0
1997	2.2	15.6	0.2	0.1	0.3	0.2	2.1	100.0
1998	2.2	16.4	0.2	0.1	0.3	0.2	2.5	100.0
1999	2.2	16.3	0.2	0.1	0.3	0.3	2.9	100.0
2000	1.9	18.3	0.2	0.1	0.2	0.3	1.7	100.0
2001	2.1	17.4	0.3	0.2	0.4	0.2	1.5	100.0
2002	2.3	17.2	0.3	0.3	0.4	0.2	1.0	100.0
2003	2.3	17.5	0.2	0.2	0.3	0.3	1.4	100.0
2004	2.3	17.7	0.2	0.2	0.3	0.2	1.0	100.0

또 인건비의 경우도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는 관리와 유통과정에서 인건비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제조원가에 노무비로 되어있는 생산현장이나 공장 등의 임금을



합산해 주어야 기업전체의 인건비를 파악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인건비의 경우는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를 합하여 사용하고, 감가상각비의 경우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관리비의 감가상각비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감가상각비를 합하여 사용하였다.

## 2. 납부액 기준

### 가. 전체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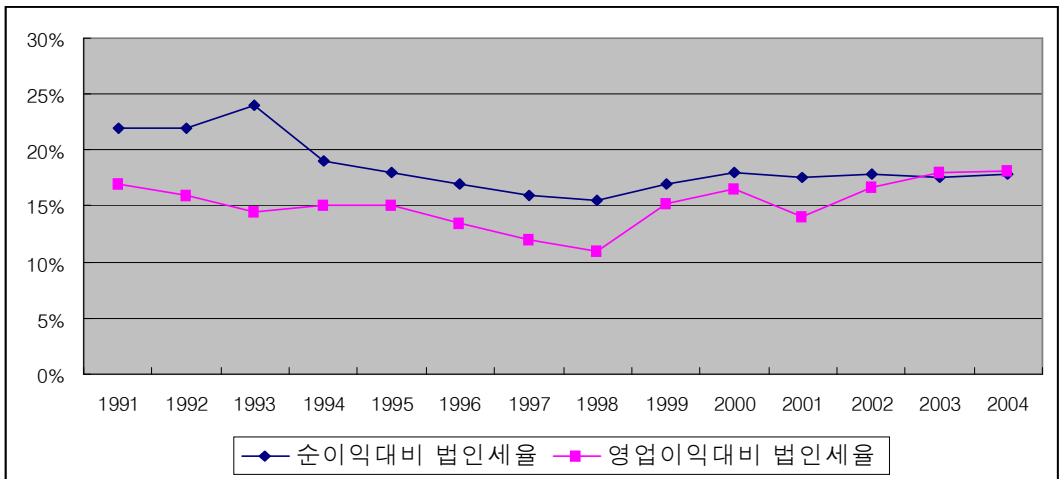
개별 기업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평균유효세율을 살펴본다. 먼저 전체기업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평균의 경우에는 외형 구간별로 평균을 구한 다음, 해당 평균에 외형구간별 비중을 적용하여 구한 값이다. 반면 중간값은 비중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한국신용평가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기업별 평균세율(세금/소득)의 중간값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하에서는 ‘순이익’이라고 한다.) 대비 세금 부담은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순이익 대비 법인세율을 보면 1991년 약 22% 수준에서 2003년에는 약 18%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대에는 평균세율이 하락하는 양상으로 보였으나 1990년대 말부터는 약간 증가하여 18%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부담 계산결과를 보면 평균세율은 1991년의 약 17% 수준에서 2003년에는 약 18%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이 하락하여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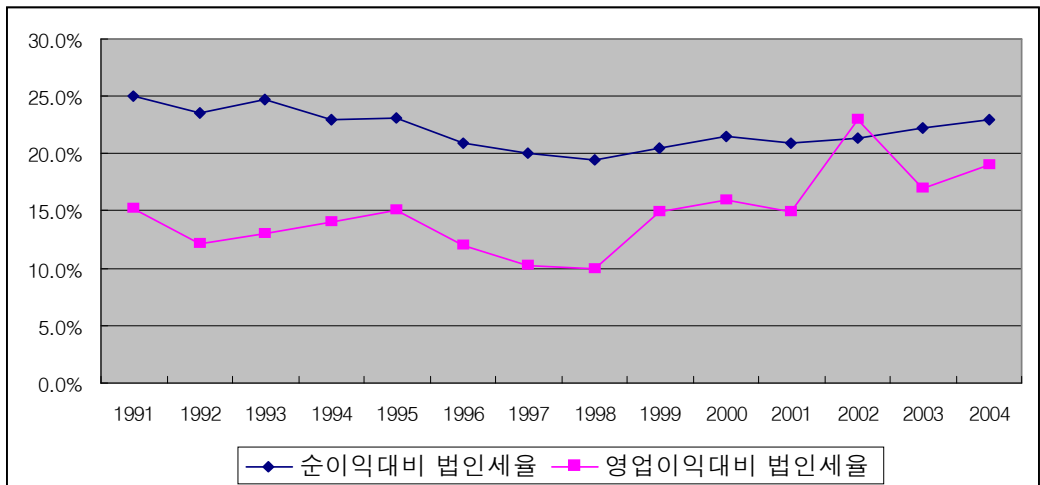
다음으로 중간값 기준으로 조세부담을 계산한 자료를 살펴보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법인의 조세부담 비율은 약 25%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1998년에

는 20%미만이었으나 최근에는 미비하지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를 다소 상회하고 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초의 15% 수준에서 점차 낮아져 1998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최근에는 20% 전후로 증가하였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기준의 평균세율이 차이는 영업외수지 때문이다.

[그림3-1] 순이익 및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 추이 (평균값)



[그림3-2] 순이익 및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 추이 (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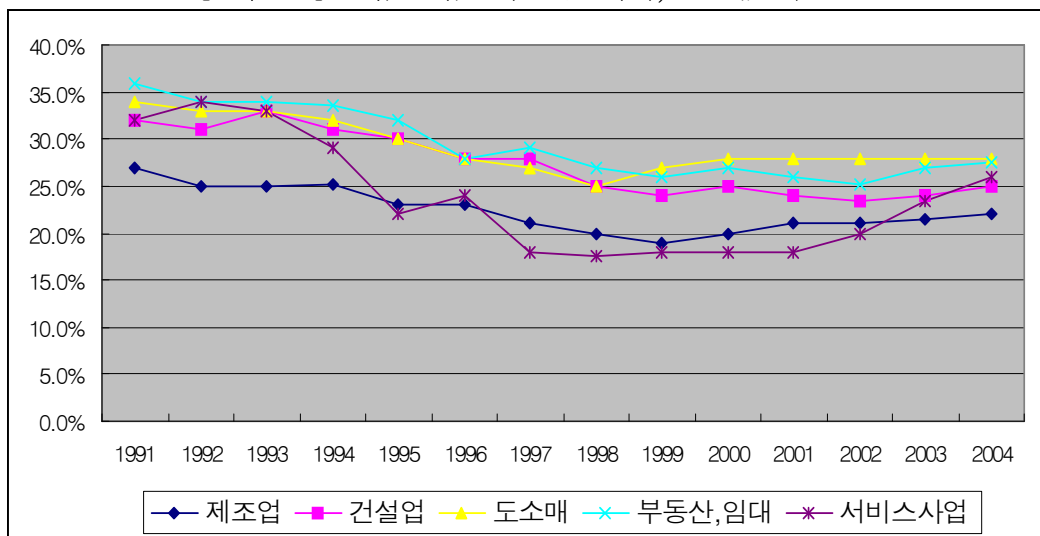


따라서 최근 양자간 차이가 거의 없어진 이유는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이 크게 감소하여 영업외수지가 거의 균형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기업의 부채비율의 감소나 시장이자율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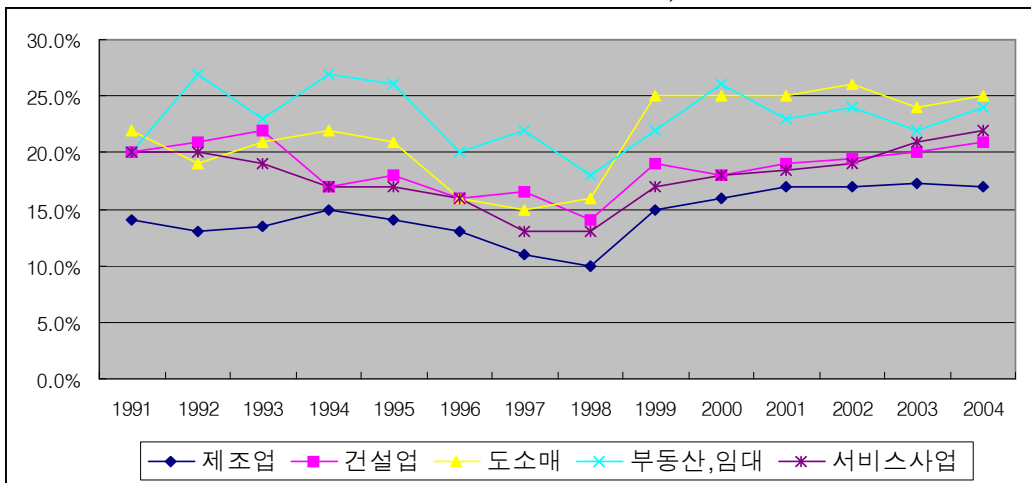
다음으로 산업별 조세부담을 살펴보자.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사업의 평균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건설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사업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후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의 세부담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종 조세감면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도소매업의 경우 영업이익 및 순이익 대비 25~28%의 높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3-3] 산업별 법인세율 (순이익, 중간값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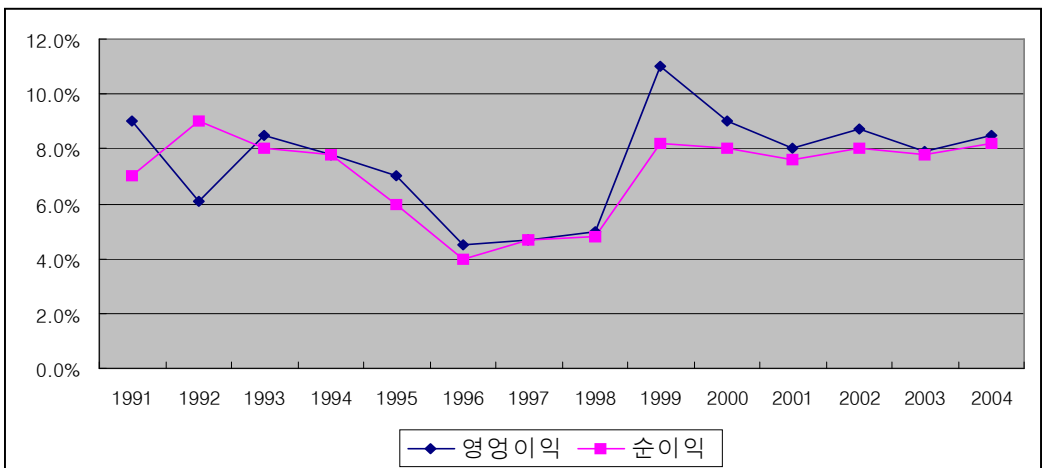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산업별 조세부담 격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  
소매업과 제조업의 세부담 격차를 살펴보면 순이익기준으로 4~8%p 차이를 보이  
고 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그 격차가 조금 더 커지고 있다. 산업별로 적정한  
조세부담의 차이를 논의할 기준은 없지만 이러한 결과는 산업을 기준으로 한 각종  
조세감면의 조정에 시사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3-4] 산업별 법인세율 (영업이익, 중간값 기준)



[그림 3-5]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세부담 격차 (중간값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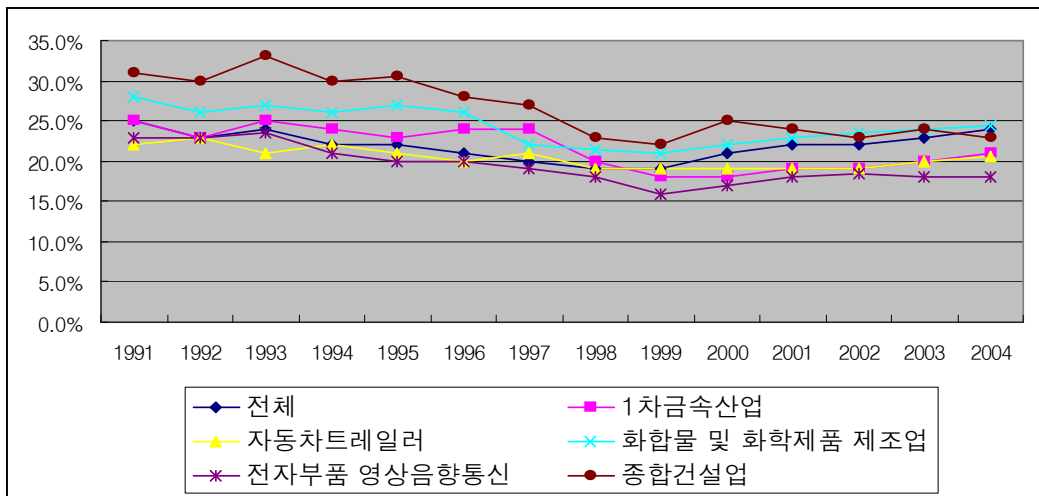


## 다.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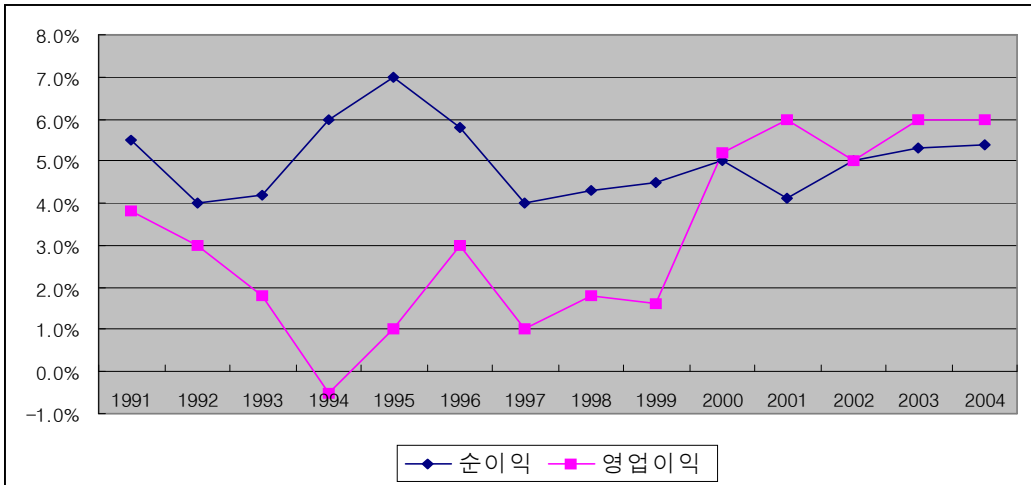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제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낮다. [그림 3-6]에 의하면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은 세부담이 높은 반면 전자부품·영상통신 업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자부품·통신 장비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의 경우 유효세율이 최근에는 23%수준으로 다소 높은 상태이며 전자부품의 경우에는 최근 18% 전후의 세부담을 지고 있다. 업종별 세부담의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초에는 평균세율이 23~33%의 구간을 나타냈으나 외환위기에 그 폭이 줄어들었다가 최근에는 약 18~25%의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업종간의 세부담 격차를 살펴보면 순이익은 1995년을 제외하고는 약4~7%p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1990년대에는 4%p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거의 같은 세부담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업종간 세부담 차이가 적은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업종간 세부담 격차의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6] 순이익 대비 세부담 (중간값 기준)



[그림3-7] 화학제품제조업과 전자부품의 세부담 격차 (중간값 기준)



### 3. 이연법인세 기준

이연법인세제도가 1999년부터 도입되었다. 따라서 1999년도 이후의 법인세비용을 실질적인 기업의 세부담액으로 보고 분석한다. 제시하는 그림은 분석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설명은 1999년 이후만으로 한정한다.

#### 가. 전체 기업

가중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를 보면 1999년 이후 순이익 및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중의 경우 1999년 약 18%에서 2003년 약 24%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도 1999년 약 16%에서 2003년 약 19%로 3%p정도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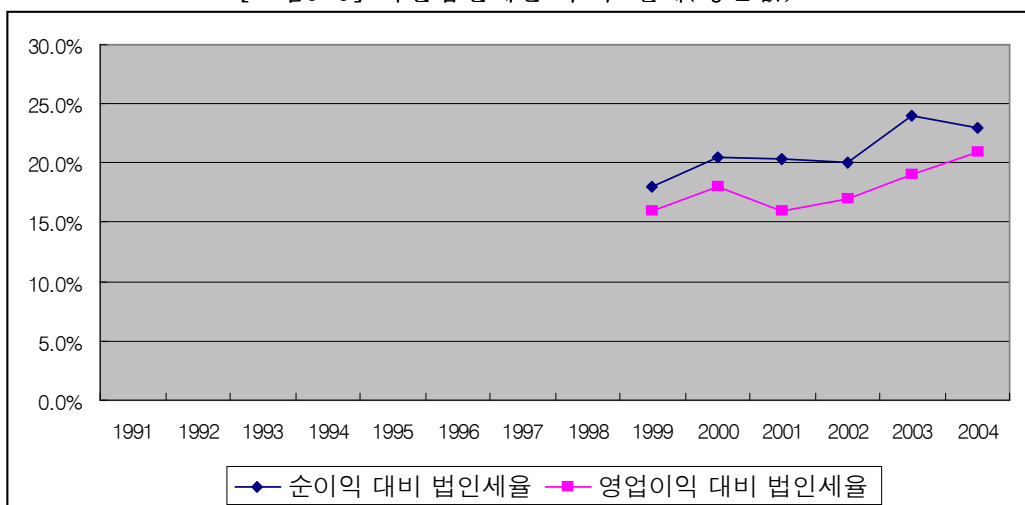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법인세 납부액 기준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순이익 대비 세금 부담은 1999년 약 17%에서 2003년 약 18%로 거의 변화가 없다. 법인세비용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2003년에 약 24%

수준이므로 납부액보다 법인세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영업이익 대비로 살펴보면 1999년 약 15%에서 2003년 약 19%로 증가하였다. 이는 법인세비용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약 1%p 정도 낮은 수준이지만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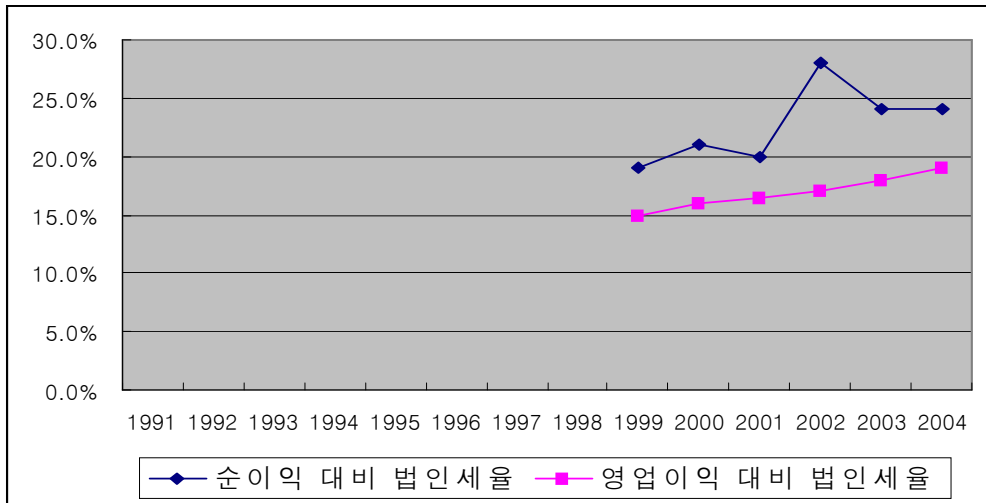
한국신용정보자료에 있는 기업의 평균세율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 경우를 보면 법인의 평균세율은 순이익 기준으로 1999년 약 20%에서 2003년 약 24%로 증가하였다. 또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1999년 약 15%에서 2003년 18%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즉, 기업체수에 대한 비중을 활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납부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법인의 조세부담 비율은 동기간에 약 20% 수준에서 22%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즉, 법인세비용을 기준으로 한 경우가 세부담 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은 1999년 15%에서 2003년 18%로 증가하였으므로 증가한 수준은 거의 동일하지만 연도별 등락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3-8] 이연법인세율 추이-전체(평균값)



[그림3-9] 이연법인세율 추이-전체(중간값)



## 나. 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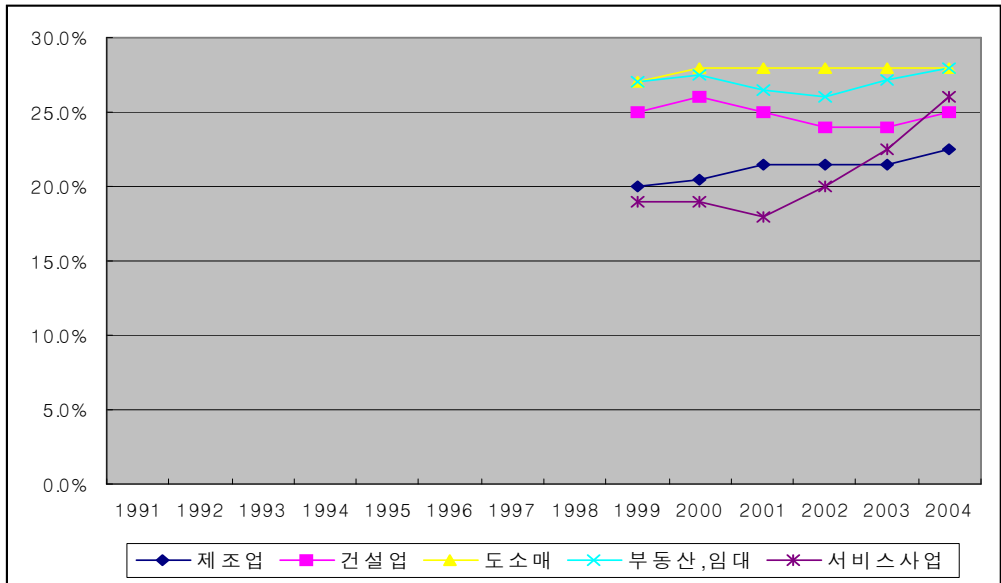
산업별 이연법인세율을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를 보면 1999년 이후 순이익 및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별 납부액 기준보다 약 1%~2% 증가한 것이다.

산업별 조세부담을 살펴보면 납부액 기준과 같이 제조업과 서비스사업의 평균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건설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사업의 경우 1998년대 초반에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최근에는 건설업을 상회하는 수준의 세부담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영업이익 및 순이익 대비 20%~23%의 낮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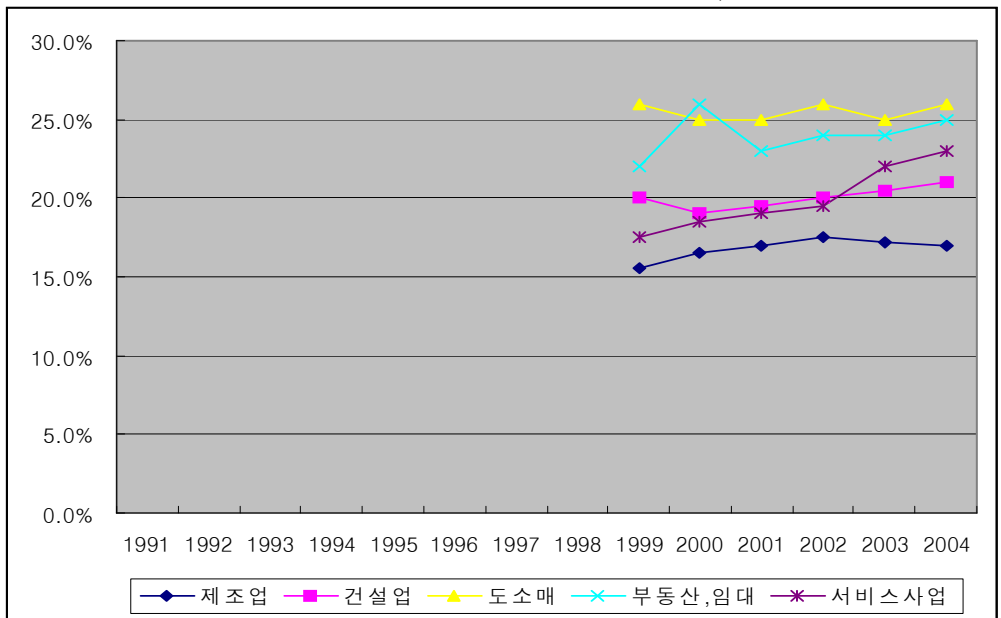
산업별 조세부담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세부담 격차를 보면 순이익 기준으로 4%~6%의 차이를 보이며, 영업이익 기준으로 8%~10%로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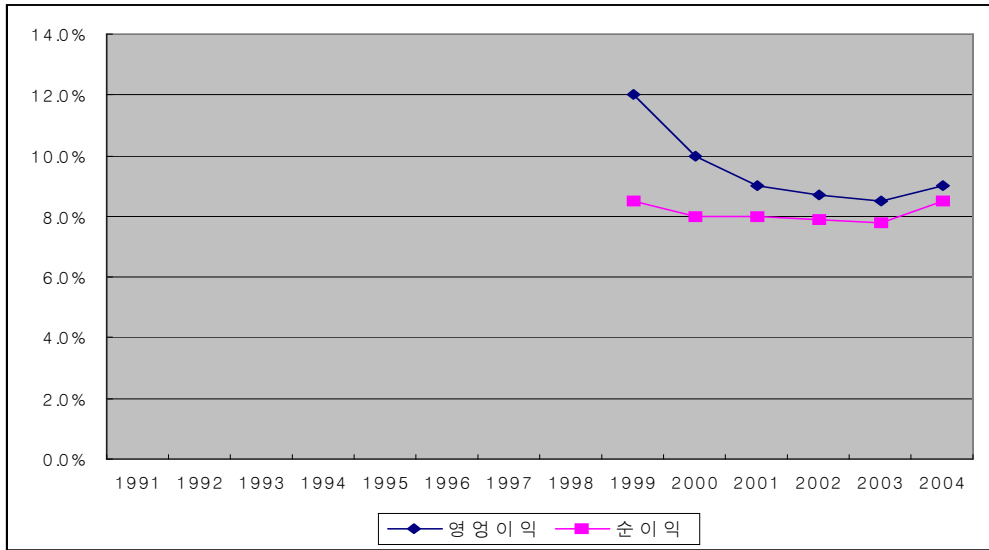
[그림3-10] 산업별 이연법인세율 추이-(순이익, 중간값 기준)



[그림3-11] 산업별 이연법인세율 추이-(영업이익, 중간값 기준)



[그림3-12] 도소매업과 제조업 세부담 격차-(중간값 기준)



#### 다. 업종별

업종별 이연법인세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제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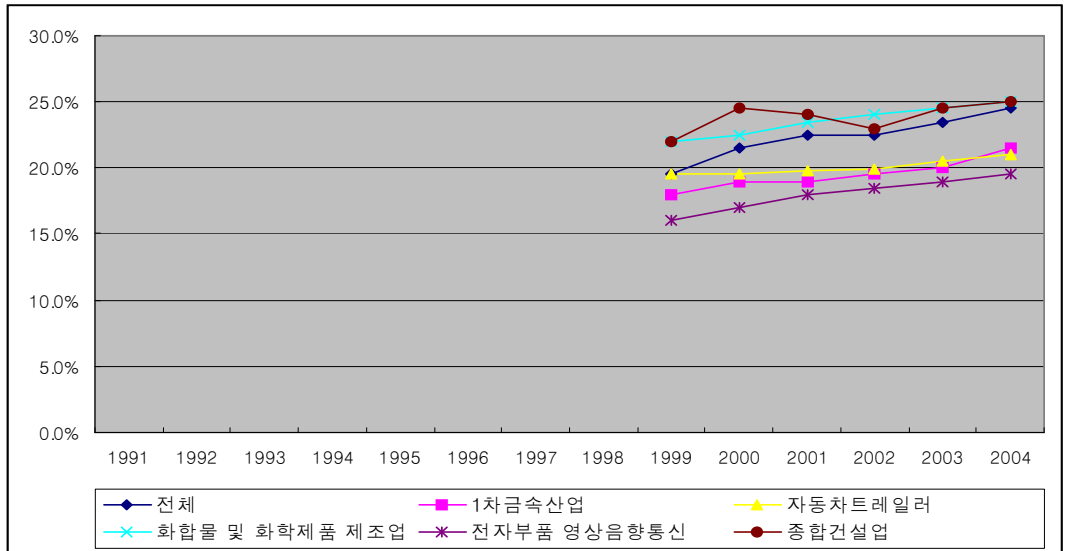
[그림 3-13]에 의하면 납부액 기준과 마찬가지로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은 세부담이 높은 반면, 전자부품·영상통신 업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자부품·통신장비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9년 이후 순이익 대비 이연법인세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업종별 납부액 기준보다 약 1%~2%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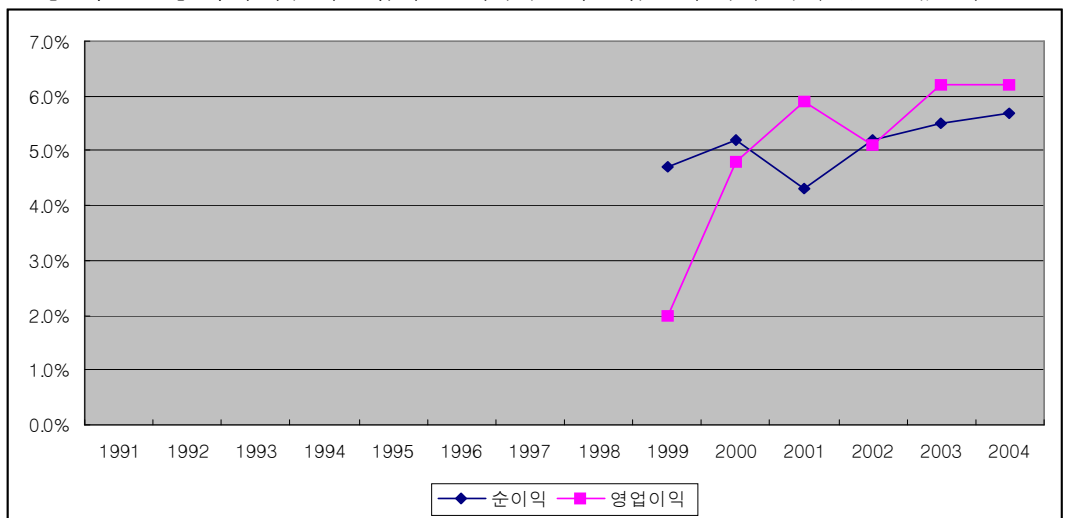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의 경우 유효세율이 최근에는 25%수준으로 다소 높은 상태이며 전자부품의 경우에는 최근 19% 전후의 세부담을 지고 있다. 업종별 세부담의 추이를 보면 최근에는 약 18~25%의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업종간의 세부담 격차를 살펴보면 순이익은 약4~6%p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최근에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거의 같은 세부담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3-13] 업종별 순이익대비 이연법인세 부담-(중간값 기준)



[그림3-14] 화학제품제조업과 전자부품 이연법인세 부담격차-(중간값 기준)



## 4. 5년 평균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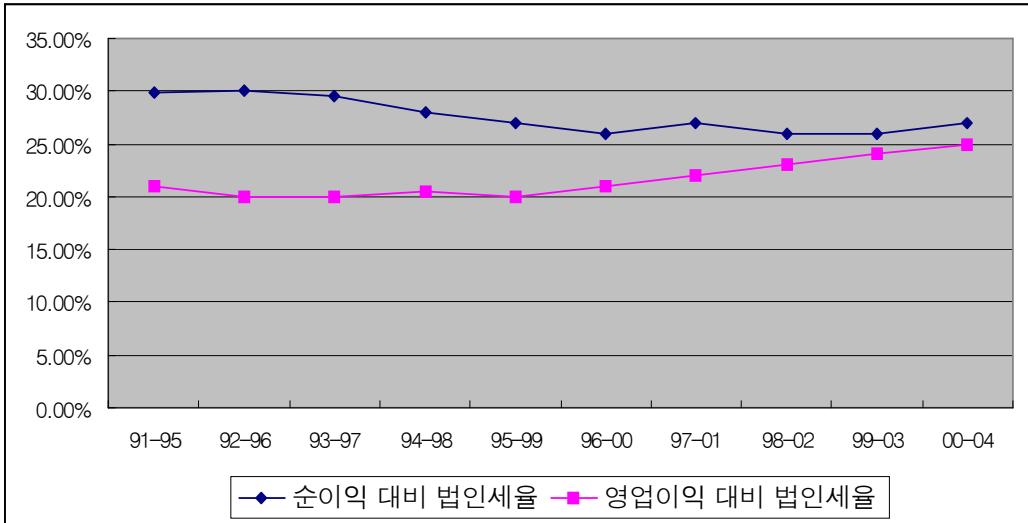
손실의 이월 등으로 인하여 단년도를 기준으로 법인의 세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다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의 소득과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년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소득 대비 세액을 계산하여 평균유효세율을 구하였다. 이 경우 동일 기업이 분석 대상이므로 자료에 지속적으로 나타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에 계속적으로 포함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법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인의 세부담이 이전 자료에 비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가. 전체 기업

가중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를 보면 법인의 세율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1990년대에 미미한 변화를 보이다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즉, 순이익 기준으로는 하락 추세이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상승 추세가 여기서도 확인되고 있다.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본 경우 순이익 기준 법인세율은 1991~1995년에 약 30% 수준이었으나 1999~2003년 기간에는 26%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만 최근에는 평균유효세율의 하락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단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

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991~1995년에 약 22% 수준이었으나 1999~2003년 기간에는 24%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없거나 다소 높아졌다. 다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5년 기준은 합산으로 발생하는 평균 효과에 의해 변동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3-15] 법인세율 추이 - 전체 (5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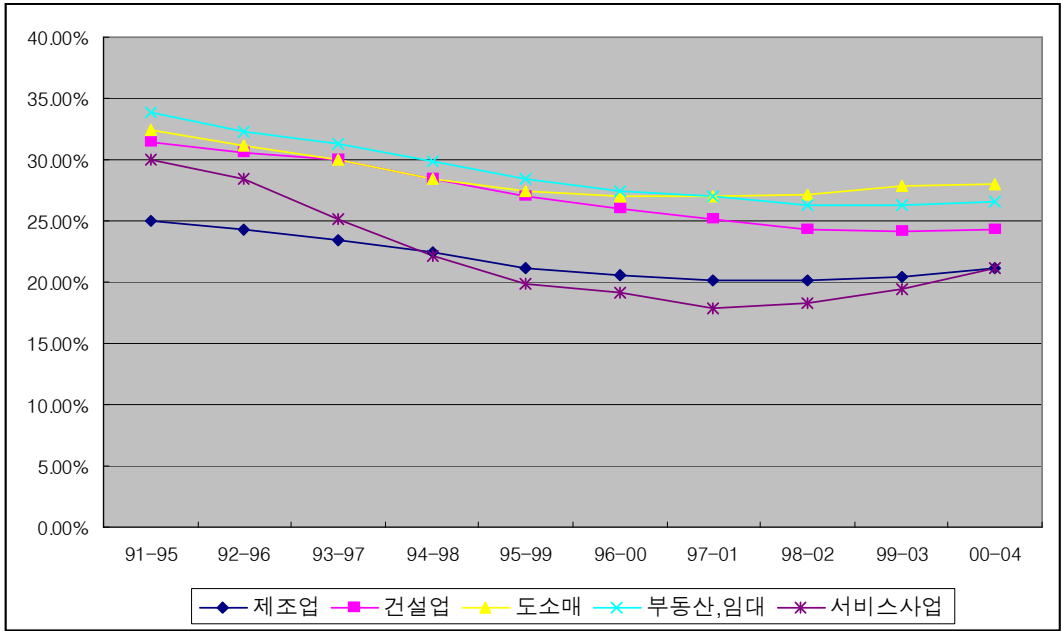


## 나. 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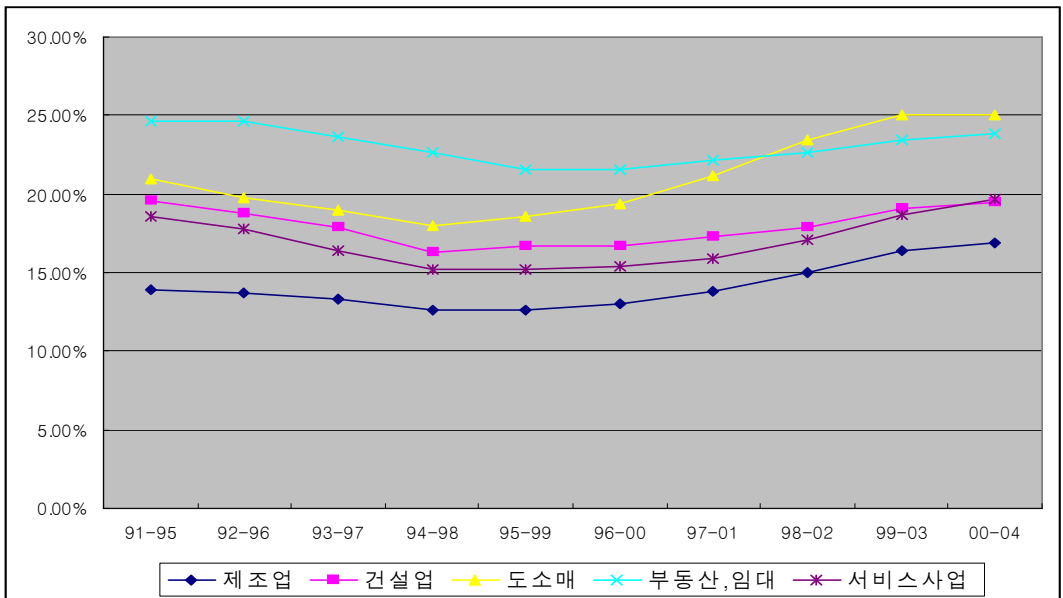
산업별 5년 평균 조세부담을 살펴보자. 자료에 따르면 순이익 및 영업이익기준 모두 제조업과 서비스사업의 평균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건설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사업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후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의 세부담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조세부담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소매업의 법인세율이 200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

법인의 세율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모든 산업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1990년대에 미비한 변화를 보이다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즉, 순이익 기준으로는 하락하는 추세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상승추세가 확인되고 있다.

[그림3-16] 산업별 법인세율 추이 - 5년 평균 (순이익 기준)



[그림3-17] 산업별 법인세율 추이 - 5년 평균 (영업이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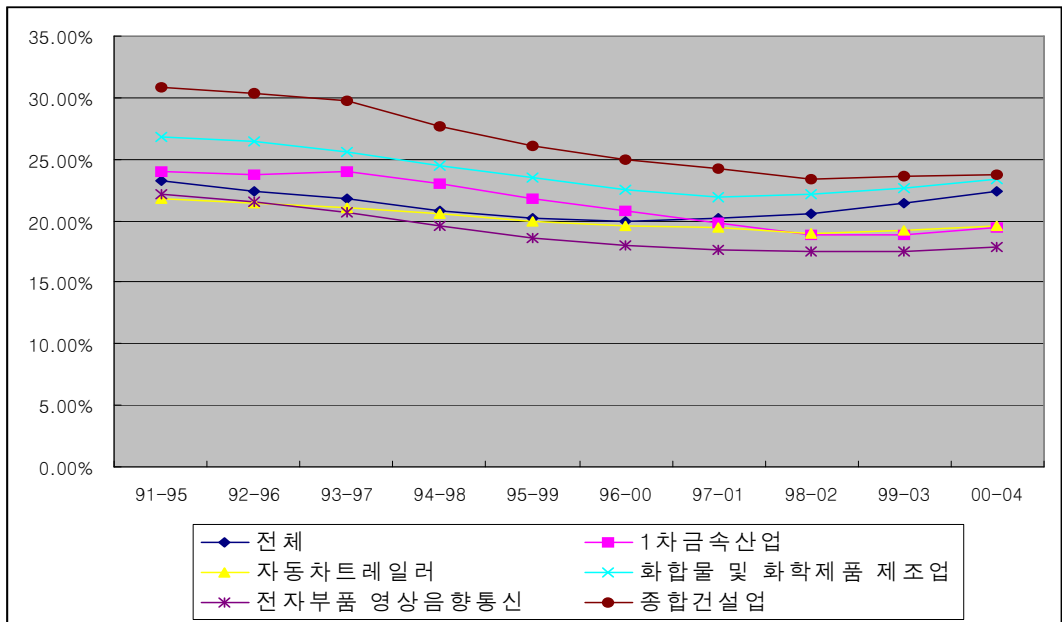
## 다. 업종별

[그림 3-18]에 의하면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은 세부담이 높은 반면 전자부품·영상통신 업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유사한 결과치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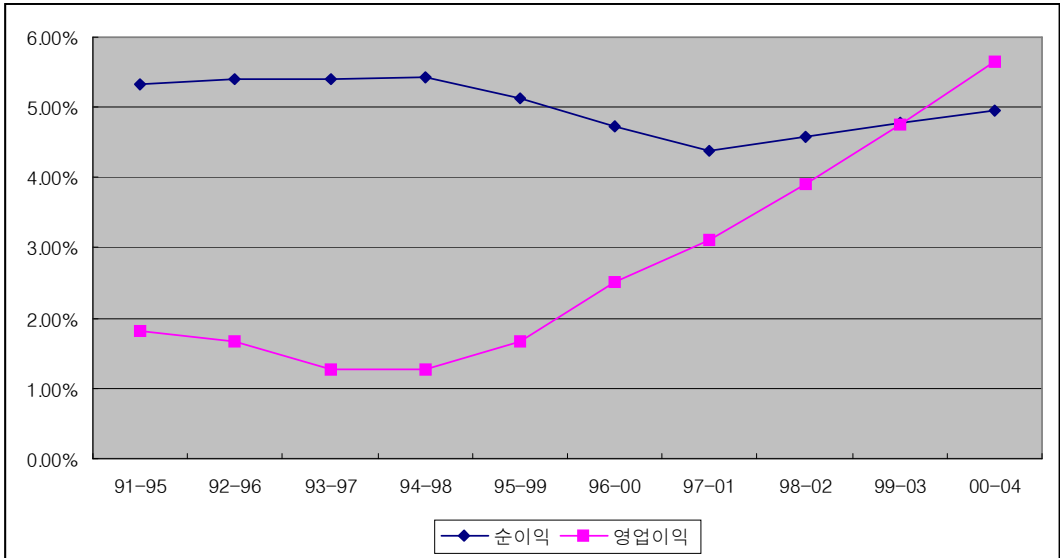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의 경우 유효세율이 최근에는 24%수준으로 다소 높은 상태이며 전자부품의 경우에는 최근 17% 전후의 세부담을 지고 있다. 업종별 세부담의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초에는 평균세율이 23~32%의 구간을 나타냈으나 외환위기에 그 폭이 줄어들었다가 최근에는 약 18~23%의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화학제품과 전자부품 세부담 격차를 살펴보면 순이익을 기준으로 4.2%~5.2%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점차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즉 1993년~1997년 1.2%에서 2000년~2004년에는 5.5%로 4.3% 증가한 것이다.

[그림3-18] 순이익 대비 세부담 - 5년 평균



[그림3-19] 화학제품 제조업과 전자부품 세부담 격차 - 5년 평균



### 제 3 절 주요국과의 비교

영업이익기준 대비 평균유효법인세율을 보면, 대체로 G7 국가가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시점별로 5~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국가에 비해 명목세율이 높은 일본(지방세를 포함한 최종세율은 40.87%)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sup>31)</sup> 동아시아 국가는 대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 보다는 높았으나 일본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경우 1998년 이전까지는 하향추세를 보인 반면에,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 약 7%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 대비 평균유효세율도 G7 국가가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대체로 높게 측

31) 김진수·박형수·안종석,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3



정되었다. 또한 영업이익기준 대비 세부담과 비교하면 순이익 대비 평균유효세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영업외수지 적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의 유리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법정최고 법인세율은 G7국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G7 국가의 경우에, 영업이익 기준하에서는 영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체로 1999년 이후 계속적으로 평균유효세율이 하향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 기준으로는 영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는 대만,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평균유효세율의 하향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오히려 태국과 홍콩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순이익 기준하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체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G7 국가들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뚜렷하게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명목세율이 40%수준에 가까웠던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등은 최근 명목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25%이하의 낮은 명목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반적으로 G7국가에 비해 평균유효세율이 낮게 측정되는 것이다.

<표 3-6> 영업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단위 : %)

		1994	1995	1996	1997	1998
G7국가 (독일제외)	미국	29.05	28.32	29.14	29.96	29.43
	영국	24.83	22.04	22.58	24.65	29.13
	이탈리아	16.68	22.77	31.46	30.59	31.32
	일본	42.52	34.57	34.00	35.50	35.50
	캐나다	23.74	26.40	25.78	23.23	25.69
	프랑스	25.17	26.19	28.08	28.63	29.12
동아시아 국가	대만	15.60	18.38	13.63	12.34	12.15
	싱가포르	23.81	23.82	23.57	25.42	24.26
	태국	22.42	22.78	20.57	21.45	19.52
	홍콩	17.21	14.71	18.63	15.18	13.21
한국		20.76	18.00	16.29	15.75	15.78
		1999	2000	2001	2002	2003
G7국가 (독일제외)	미국	30.11	31.33	27.07	26.61	26.84
	영국	26.72	24.49	23.22	26.83	25.90
	이탈리아	36.46	34.70	31.71	34.89	30.05
	일본	39.43	31.11	32.67	33.43	34.02
	캐나다	27.81	27.80	25.31	24.46	23.46
	프랑스	29.60	31.11	30.15	30.66	24.98
동아시아 국가	대만	14.64	14.39	13.28	13.01	10.95
	싱가포르	21.56	20.60	24.11	21.17	14.87
	태국	13.63	14.56	15.91	18.48	17.86
	홍콩	10.23	14.62	16.48	16.92	19.05
한국		22.92	23.83	24.13	28.63	24.25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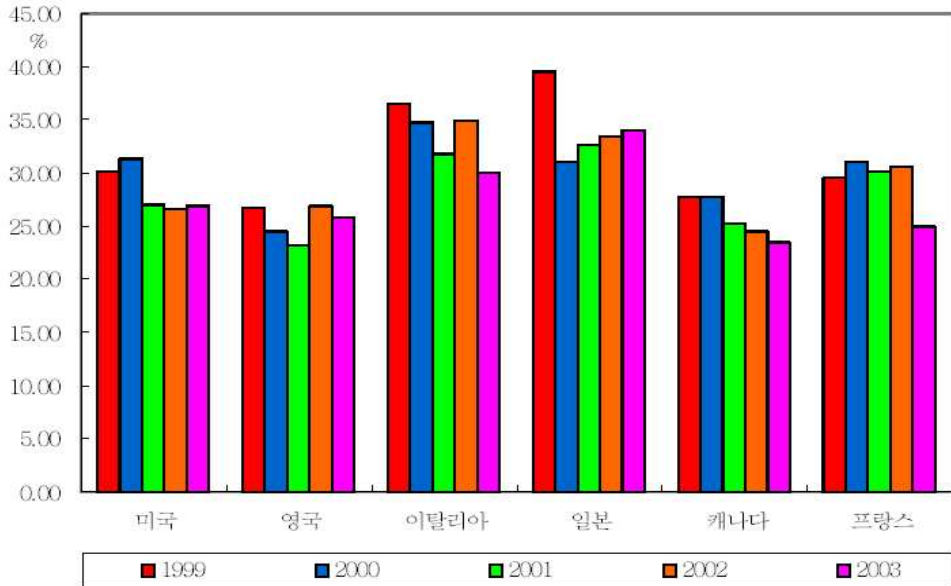
<표 3-7> 법인세차감진순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단위 : %)

		1994	1995	1996	1997	1998
G7국가 (독일제외)	미국	35.47	34.95	34.92	35.31	33.41
	영국	30.03	30.21	29.68	30.78	32.77
	이탈리아	41.09	33.95	40.20	43.00	38.92
	일본	58.6	55.72	52.32	51.45	51.80
	캐나다	34.12	36.19	35.49	33.92	34.14
	프랑스	32.76	33.57	34.00	32.74	33.50
동아시아 국가	대만	17.33	24.31	20.22	14.81	14.63
	싱가포르	23.89	24.02	24.03	25.33	24.99
	태국	28.77	28.74	26.16	27.27	19.90
	홍콩	12.99	11.94	10.64	11.86	15.02
한국		34.23	31.67	31.53	30.64	23.74
		1999	2000	2001	2002	2003
G7국가 (독일제외)	미국	34.89	35.31	35.24	32.13	31.88
	영국	30.13	27.89	28.87	30.48	31.32
	이탈리아	39.13	44.46	33.71	36.31	37.47
	일본	52.24	47.73	41.39	44.86	43.70
	캐나다	36.05	35.12	32.48	31.57	28.37
	프랑스	34.75	33.55	34.66	37.29	28.48
동아시아 국가	대만	16.90	16.78	16.10	15.72	12.74
	싱가포르	12.03	21.01	22.93	24.43	17.43
	태국	18.12	22.15	22.99	24.31	20.45
	홍콩	6.27	14.03	18.83	18.29	20.82
한국		29.18	24.37	27.02	25.89	2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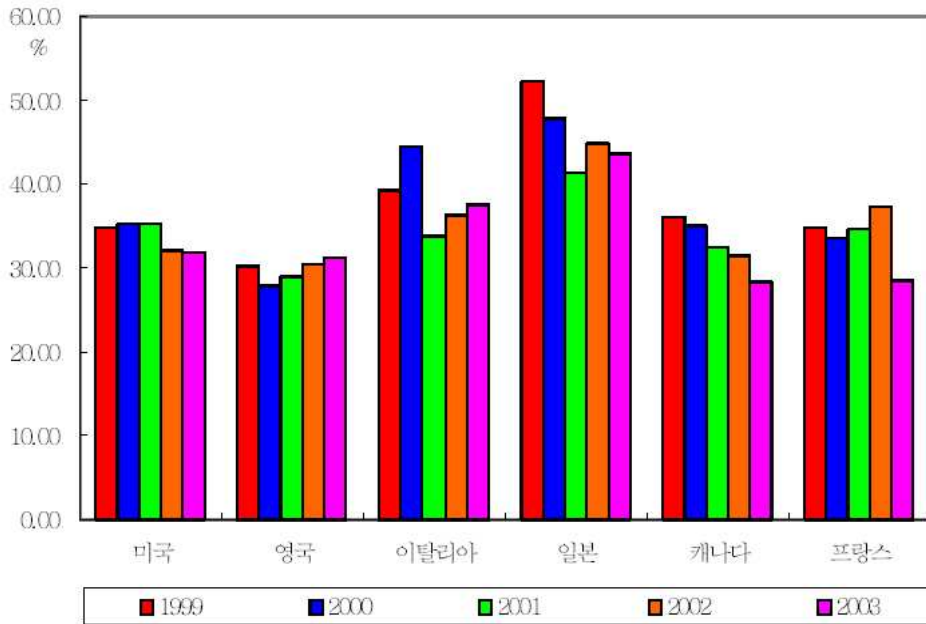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2004

[그림3-20] G7국가 영업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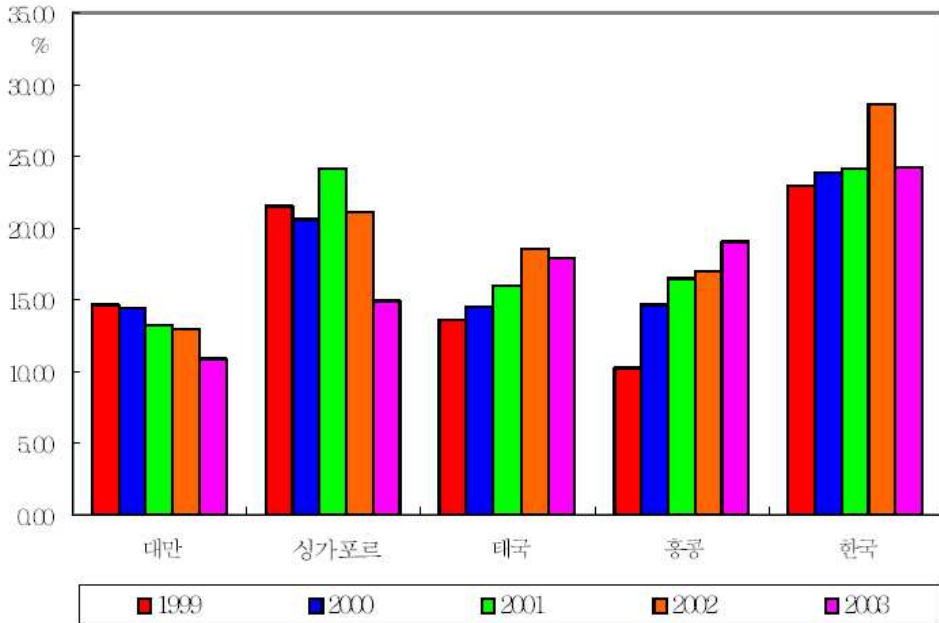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편방향」, 2004

[그림3-21] G7국가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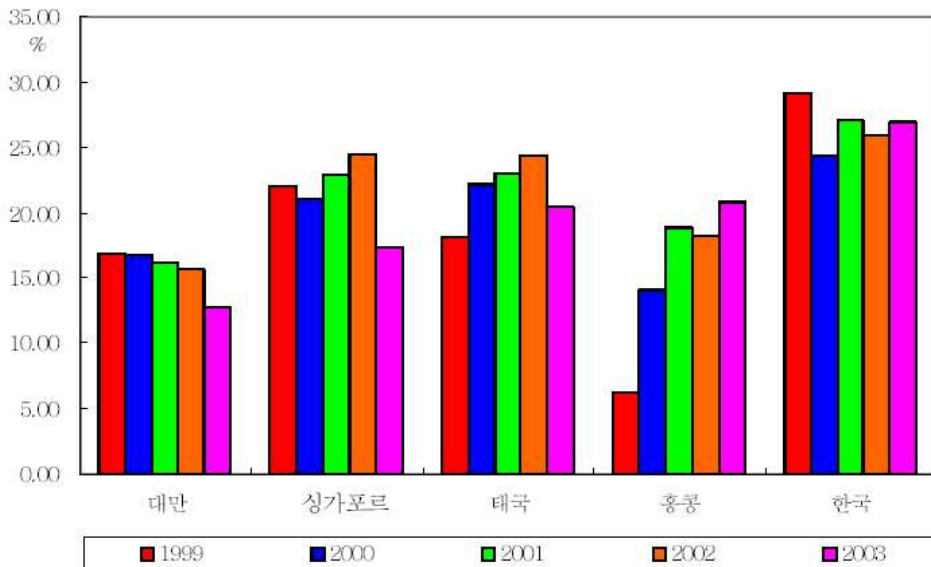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편방향」, 2004

[그림3-22] 동아시아국가 영업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편방향」, 2004

[그림3-23] 동아시아 국가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편방향」, 2004

# 제 4 장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제 1 절 패널모형의 도입

최근 경제현상분석에서 패널자료에 근거해 다양한 결론을 도출해 내고 있다. 패널자료란 횡단자료(cross section data)와 시계열자료(time series data)를 하나로 통합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형태 중의 하나이다.<sup>32)</sup>

패널자료가 갖는 장점은 매우 다양하다. 무엇보다도 횡단분석이나 시계열분석에 비해 관측치(observations)의 수가 크기 때문에 자유도(degree of freedom) 문제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동시에 추정값(estimates)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특히 가계 소비자자료인 경우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 간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계열분석만으로 적절한 추정값을 얻기가 곤란한데 반해 패널자료분석은 횡단관측치간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계열자료나 횡단자료에 비해 보다 복잡한 동태적·행동적 가설검정이 가능하다. 즉 시계열자료는 시간이라는 공간에서 횡단관측치들의 개별특성을 무시하고 이를 통합(aggregate)내지는 평균화해 놓은 것임에 반해 패널자료에서는 시간경과에 따른 횡단관측치간의 변화추이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패널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계량추정식에서 종종 분석하기가 어려웠던 잠재된(latent) 혹은 관측 불가능한(unobservable) 교란항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sup>33)</sup>

32) 따라서 패널자료를 종종 “cross section over time” 또는 “pooled cross section time series data” 로 부르기도 한다.

33) 패널자료 이용시의 장점은 Baltagi(1995)와 Hsiao(1985,1986,1989)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러한 패널자료의 계량분석은 당연히 기존 횡단분석방법이나 시계열분석방법과는 다르다. 패널자료에 횡단분석기법을 적용한다면 시간경과에 따른 표본의 동태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며, 반대로 시계열자료 분석기법만을 적용한다면 횡단관측치간의 차이(individual heterogeneity)를 고려하지 않은 추정결과를 얻게 된다. 외국의 우수 논문들이 패널자료의 계량분석을 이용해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계량경제패키지 이용에 그쳐, 실제 컴퓨터의 패널자료 추정이 어떤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말 그대로 그들의 추정결과가 블랙박스(black box)화 되는 경향이 있다.

## 1. 패널자료모델의 구분

패널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모델은 대개 다음과 같이 가장 복잡한(일반적인) 경우에서부터 단순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추정계수가 횡단관측치 및 시간경과에 모두 따라 변하는 경우

$$Y_{it} = \alpha_i + \sum_{k=1}^K \beta_{ki} X_{kit} + u_{it}, \quad i = 1, \dots, N, \quad t = 1, \dots, T \quad (4.1)$$

여기서  $i$  는 횡단면상의 개별관측치를 의미하며  $t$  는 시간변수를 나타낸다.  $N$  은 표본에 있는 횡단관측치의 총합이고,  $T$  는 시계열기간을 나타낸다. 따라서 표본의 총수는  $NT$  개가 된다.

- ② 추정계수가 횡단관측치에 따라 변하지만 시간경과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우

$$Y_{it} = \alpha_i + \sum_{k=1}^K \beta_{ki} X_{kit} + u_{it} , \quad i = 1, \dots, N, \quad t = 1, \dots, T \quad (4.2)$$

- ③ 기울기(slope) 계수( $\beta$ )는 일정하나 절편(intercepter)의 ( $\alpha$ ) 값은 횡단관측치 및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

$$Y_{it} = \alpha_{it} + \sum_{k=1}^K \beta_k X_{kit} + u_{it} , \quad i = 1, \dots, N, \quad t = 1, \dots, T \quad (4.3)$$

- ④ 기울기 계수( $\beta$ )는 일정하나 절편의 ( $\alpha$ ) 값은 횡단관측치에 따라서만 변하는 경우

$$Y_{it} = \alpha_i + \sum_{k=1}^K \beta_k X_{kit} + u_{it} , \quad i = 1, \dots, N, \quad t = 1, \dots, T \quad (4.4)$$

- ⑤ 모든 추정치의 값이 횡단 또는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우

$$Y_{it} = \alpha + \sum_{k=1}^K \beta_k X_{kit} + u_{it} , \quad i = 1, \dots, N, \quad t = 1, \dots, T \quad (4.5)$$

위의 5가지 경우는 다시 교란항(disturbance term)의 구조(structure)를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서 아래의 식(4.6)의 경우와 같은 one way error component Model과 식(4.7)과 같은 two way error component model로 나눌 수 있다.<sup>34)</sup>

---

34) 이와 같은 이유로 패널자료 모델을 종종 오차수정모델(ECM : error component model) 이라 부르기도 한다.



$$u_{it} = \mu_i + \epsilon_{it} \quad (4.6)$$

$$u_{it} = \mu_i + \lambda_t + \epsilon_{it} \quad (4.7)$$

패널자료 분석에서 이와 같은 교란항의 분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추정모형을 ①~⑤와 같이 설정했다는 것은 교란항 역시 횡단관측치 및 시계열자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므로 설정된 모델에서 생략된 혹은 관측 불가능한 변수들의 영향 역시 횡단관측치만에 의한 영향( $\mu_i$ )과 시계열만에 의한( $\lambda_t$ ), 혹은 이 둘을 혼합한 영향( $\epsilon_{it}$ )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종  $\mu_i$ 를 individual time invariant variable,  $\lambda_t$ 를 period (or time) individual invariant, 그리고  $\epsilon_{it}$ 를 individual time varying variable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오차수정모형( ECM : error component model)은 각각의 교란항을 고정된(fixed) 상수로 볼 것인가 또는 활률변수(random variable)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패널자료 경제모델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 즉 기울기는 일정하지만 절편이 개별관측치 또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분석을 시도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모델설정의 추정계수가 모든 개별관측치 및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는 기존모델의 대안으로써 간단하면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고정효과모델 (Fixed Effect Model)<sup>35)</sup>

고정효과모델은 다음의 식으로 설명가능하다.

$$Y_{it} = \alpha + \sum_{k=1}^K \beta_k X_{kit} + u_{it} \quad , \quad u_{it} = \mu_i + \epsilon_{it} \quad , \quad \epsilon_{it} \sim iid(0, \sigma_\epsilon^2) \quad (4.8)$$

여기서  $i$ 는 가계, 개인, 기업, 국가 등 횡단관측치를 뜻하며  $t$ 는 시간변수이다. 따라서  $i$ 는 횡단공간을 나타내며,  $t$ 는 시간공간을 의미하게 된다. 총  $K$ 개의 설명변수가 있고 특정시점에서 횡단자료의 수는  $N$ 개이며, 총시계열수는  $T$ 개로 전체 관측치는  $NT$ 개가 된다. 교란항( $\mu_{it}$ )은 다시 관측 불가능한(unobservable) 횡단효과( $\mu_i$ )와 나머지 교란항( $\epsilon_{it}$ )으로 구분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고정효과모델은 바로 이  $\mu_i$ 를 고정된 상수로 취급한다.

식 (4.8)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Y_{it} = (\alpha + \mu_i) + \sum_{k=1}^K \beta_k X_{kit} + \epsilon_{it} = \alpha_i + \sum_{k=1}^K \beta_k X_{kit} + \epsilon_{it} \quad (4.9)$$

단  $\alpha_i = \alpha + \mu_i$

위 식을 대표적인 횡단관측치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_i = \alpha_i l_T + X_i \beta + \epsilon_i \quad , \quad i = 1, \dots, N \quad (4.10)$$

---

35) 여기서는 one way error component model에 중점을 두겠다. two way error component model의 경우도 이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있다.

여기서  $y_i$ 는  $T \times 1$  행렬이며(즉  $y_i = [Y_{i1}, Y_{i2}, \dots, Y_{iT}]'$ )  $l_T = [1, 1, \dots, 1]$ 는 그 원소가 모두 1인  $T \times 1$ 인 행렬, 그리고  $X_i$ 는

$$X = \begin{bmatrix} X_{1i1} & X_{2i1} & \dots & X_{ki1} \\ X_{1iT} & X_{2iT} & \dots & X_{kiT} \end{bmatrix} \text{인 } T \times K \quad (4.11)$$

행렬, 그리고  $\epsilon_i$ 는  $T \times 1$  행렬이다.  $\epsilon_i = [\epsilon_{i1}, \epsilon_{i2}, \dots, \epsilon_{iT}]'$

이제 다음과 같은  $T \times T$  변환행렬  $Q_T (= I_T - \frac{1}{T} l_T l_T')$ 를 식 (4.10)에 곱하면 식 (4.10)의 절편  $\alpha_i$ 는 소거되고 설명변수들은 시간에 걸친 평균과의 편차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변환된다.

$$Q_T y_i = Q_T X_i \beta + Q_T \epsilon_i \quad (4.12)$$

$$\text{즉 } Q_T y_i = y_i - l_T \bar{y}_i \quad (\text{단 } \bar{y}_i = \frac{1}{T} \sum_{t=1}^T y_{it}) \quad Q_T \alpha_i l_T = 0$$

그리고  $Q_T X_i = X_i - l_T \bar{X}_i'$ 이 되어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은 특정 횡단면치에 대하여 그 시계열상의 산술평균을 구해 각각의 값에서 빼준 형태의 새로운 변수로 전환된다.<sup>36)</sup> 이제 횡단자료공간에서 식 (4-12)를 행렬식 형태로 고쳐주면

$$\begin{bmatrix} Q_T y_1 \\ \vdots \\ Q_T y_N \end{bmatrix} = \begin{bmatrix} Q_T X_1 \\ \vdots \\ Q_T X_N \end{bmatrix} \beta + \begin{bmatrix} Q_T \epsilon_1 \\ \vdots \\ Q_T \epsilon_N \end{bmatrix} \quad (4.13)$$

---

36) 이와 같은 방전식 내부에서 일어난 변환을 내부변환( Within Transformation)이라고 한다.

또는

$$Qy = QX\beta + Q\epsilon \quad (4.14)$$

$$\text{단, } Q = I_N \otimes Q_T^6$$

여기서  $\otimes$ 는 두 행렬간의 크로네커 (Kronecker product) 곱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 (4-14)는 통상의 최소자승법(OLS) 적용이 가능하며 기울기의 추정치  $\hat{\beta}$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hat{\beta} = (X' Q QX)^{-1} X' Q Qy \quad (4.15)$$

이 때 개별 절편은

$$\hat{\alpha}_i = \bar{y}_i - \bar{X}_i' \hat{\beta}, \quad i = 1, \dots, N \quad (4.16)$$

$$\text{단, } \bar{y}_i = \frac{1}{T} \sum_{t=1}^T Y, \quad \bar{X}_i = [\bar{X}_{1i}, \dots, \bar{X}_{Ki}], \quad \bar{X}_{ki} = \frac{1}{T} \sum_{t=1}^T X_{kit}$$

로 얻을 수 있다. 물론 당연히 위의 OLS 추정치들은 효율적(efficient)이며 불편추정치(unbiased estimator)가 된다.

아울러  $\hat{\beta}$ 분산은

$$\text{Var}(\widehat{B}) = \sigma_\epsilon^2 (X' QX)^{-1}, \quad \hat{\sigma}_\epsilon^2 = \frac{(Qy - QX\hat{\beta})' (Qy - QX\hat{\beta})}{N(T-1) - K} \quad (4.17)$$

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와같이 고정효과모델에서 변환행렬Q에 의한 추정방법을 최소자승 더미변수

(LSDV : least square dummy variable)에 의한 추정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a_i$ 를 마치 횡단터미변수로 취급해 추정해도 위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방법은 횡단관측치의 개수가 많을 경우 자유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3. 임의효과모델 (*Random Effect Model*)

임의효과모델은 고정효과모델에서 상수로 취급했던  $\mu_i$ 를 활률변수로 취급한 경우이다. 따라서  $\mu_i$  와  $\epsilon_{it}$  간의 분포에 대한 기본가정이 필요하다.

$$Y = \alpha + \sum_{k=1}^K \beta_{kit} X_{kit} + u_{it} + \epsilon_{it} \quad (4.18)$$

대개의 경우 이들 가정은 다음과 같다.

$$\text{모든 } i, t \text{에 대해 } E(\mu_i) = E(\epsilon) = 0 \quad (4.19)$$

$$\text{모든 } i, j, t \text{에 대해 } E(\mu_i \epsilon_{jt}) = 0 \quad (4.20)$$

$$\text{모든 } i, j \text{에 대해 } E(\mu_i \mu_j) = \begin{bmatrix} \sigma_\mu^2 (i = j) \\ 0 (i \neq j) \end{bmatrix} \quad (4.21)$$

$$\text{모든 } i, j, t, s \text{에 대해 } E(\epsilon_{it} \epsilon_{js}) = \begin{bmatrix} \sigma_\epsilon^2 (i = j, t = s) \\ 0 (\text{기타}) \end{bmatrix} \quad (4.22)$$

즉 교란항  $u_i$ 와  $\epsilon_{i,t}$  간에 서로 확률적으로 독립이며 각각은 자체의 동분산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위의 식(4.18)을 행렬을 이용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 = X\beta + (I_N \otimes l_T)\mu + \epsilon \quad (4.23)$$

단  $y' = [Y_{11} Y_{12}, \dots, Y_{NT}]$ ,  $X' = [X_1 X_2, \dots, X Y_N]$   $X_i$ 는 시간변수 대해  $X_{kit}$ 를 집약한(stacking)  $T \times K$  행렬이다. 따라서 임의효과모델은 다음의 식(4.24)와 같이 행렬을 이용해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y = X\beta + \mu, \mu = (I_N \otimes l_T)\mu + \epsilon \quad (4.24)$$

앞서 설정한 가정을 이용하면 교란항  $u$ 의 분산-공분산행렬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begin{aligned} E(\mu\mu') &= (\sigma_\mu^2 + \sigma_\epsilon^2) \left( \frac{\sigma_\mu^2}{(\sigma_\mu^2 + \sigma_\epsilon^2)} (I_N \otimes l_{T_t}') + \frac{\sigma_\mu^2}{(\sigma_\mu^2 + \sigma_\epsilon^2)} I_{NT} \right) \\ &= \sigma^2 (\rho (I_N \otimes l_{T_t}') + (1 - \rho) I_{NT}) = \sigma^2 \Omega \end{aligned} \quad (4.25)$$

$$\text{단, } \Omega = \rho (I_N \otimes l_{T_t}') + (1 - \rho) I_{NT}, \sigma^2 = (\sigma_\mu^2 + \sigma_\epsilon^2), \rho = \frac{\sigma_\mu^2}{(\sigma_\mu^2 + \sigma_\epsilon^2)}$$

특히  $\Omega$ 는 block diagonal 행렬로 주대각 원소는 다음과 같은 행렬  $A$ 로 표현할 수 있으며, 행렬  $A$ 는 그 주대각원소는 1이고 나머지 부분의 원소는  $\rho$  인  $T \times T$  행렬이다.

$$\begin{aligned} \Omega &= \rho (I_N \otimes l_{T_t}') + (1 - \rho) I_{NT} \\ &= I_N \otimes [\rho l_{T_t} + (1 - \rho) I_T] = I_N \otimes A \end{aligned} \quad (4.26)$$

흔히 이  $\rho$  를 내부상관계수(intracorrelation)라고 부르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교란항의 총 변동 중 횡단치로부터 발생한 변동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rho$ 가 0값을 갖게되면 이는 패널분석결과와 전체자료를 단순히 회귀분석한, 즉 관측치를 횡단 또는 시계열 구분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와 같게 된다. 반면  $\rho = 1$  이면 패널결과는 횡단분석기법에 의한 결과와 같게 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rho$  값은 0과 1사이에 놓이게 된다.

한편 임의효과모델의 식(4.24)는 일반최소자승법(GLS)을 적용할 수 있고, 따라서  $\beta$ 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widehat{\beta}_{GLS} = (X' \Omega^{-1} X)^{-1} (X' \Omega^{-1} y) \quad (4.27)$$

그러나 임의효과모델의 실제응용에 있어서 일반최소자승법을 적용하는 예는 드물다. 그 이유는  $\Omega^{-1}$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A의 역행렬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행렬 A의 차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역행렬  $A^{-1}$ 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최소자승법 보다는 행렬 A가 대칭행렬이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직교행렬(orthogonal matrix)이 존재하므로 이를 이용해 원자료를 변형하여 통상의 최소자승법(OLS)을 적용한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행렬 A는 T×T 행렬로 그 T개의 특성근은 1개의  $\epsilon = 1 - \rho + T\rho$ 와 (T-1)개의  $\eta = 1 - \rho$ 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실을 이용하여 임의 효과모델을 대표적인 횡단관측치에 대해 정리한 다음 양변에  $A^{-1/2}$ 을 곱하여 모델식을 사전에 변형하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y_i^* = A^{-1/2} y_i = \xi^{-1/2} \begin{bmatrix} \bar{y}_i \\ \vdots \\ \bar{y}_i \end{bmatrix} + \eta^{-1/2} \begin{bmatrix} y_{i1} - y_i \\ \vdots \\ y_{iT} - y_i \end{bmatrix} = \begin{bmatrix} y_{i1}^* \\ \vdots \\ y_{iT}^* \end{bmatrix} \quad (4.28)$$

$$\text{단, } \bar{y}_i = \frac{1}{T} \sum_{t=1}^N y_{it}$$

따라서 변형된  $y_{it}^*$  는 행렬 A의 특성근의 평방근(square root)의 역수를 가중치로 하는 원자료의 횡단평균치(individual mean)  $\hat{Y}_i$ 와 횡단평균치와의 편차,  $(y_{it} - \bar{y}_i)$ 의 가중평균치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X_i^* = A^{-1/2} X_i = \xi^{-1/2} \begin{bmatrix} \overline{1X_{2i}}, \dots, \overline{X_{K\hat{i}}} \\ \vdots \\ \overline{1X_{2i}}, \dots, \overline{X_{K\hat{i}}} \end{bmatrix} + \eta^{-1/2} \begin{bmatrix} 0X_{2i1} - \overline{X_{2i}}, \dots, X_{kil} - \overline{X_{ki}} \\ \vdots \\ 0X_{2iT} - \overline{X_{2i}}, \dots, X_{K\hat{i}T} - \overline{X_{K\hat{i}}} \end{bmatrix} \quad (4.29)$$

이 되고 변형된 식은  $y_i^* = X_i^* \beta + u_i^* \quad i = 1, 2, \dots, N$ 이고  $E(u_i^* u_i^{*'}) = \sigma^2 I_T$

( 단  $\sigma^2 = \sigma_u^2 + \sigma_\epsilon^2$  )

$$\begin{bmatrix} y_1^* \\ \vdots \\ y_N^* \end{bmatrix} = \begin{bmatrix} X_1^* \\ \vdots \\ X_N^* \end{bmatrix} \beta + \begin{bmatrix} \mu_1^* \\ \vdots \\ \mu_N^* \end{bmatrix} \quad (4.30)$$

$$\text{또는 } Y^* = X^* \beta + \mu^*$$

그러므로 변형된 식(4.30)은 통상의 최소자승법만을 적용해 일반최소자승법으로 구한 추정량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실제 패널자료분석시  $\Omega$  또는 행렬 A를 모르기 때문에 이를 추정해야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의 핵심은  $\rho$ 값의 추정문제로 최종적으로는 각각의 교란항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게 된다. 현재까지 다양한 추정방법이 알려져 있으며 중요한 것은 점근적으로(asymptotically) 바람직한 성질을 갖는  $\rho$ 의 일치추정량을 구하는 것이다.



#### 4. 우도추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교란항이 정규분포를 한다고 가정하면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는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 즉 앞서의 임의효과모델로부터,  $y = X\beta + u$ ,  $u = (I_N \otimes I_T) \mu + \varepsilon$ 로부터 (단  $U \sim N(0, \sigma^2 \Omega)$ )

$$\begin{aligned} L(\beta, \sigma_\mu^2, \sigma_\varepsilon^2 | Y_{11}, \dots, Y_{1T}, Y_{21}, \dots, Y_{M1}, \dots, Y_{NY}) & \quad (4.31) \\ &= \left( \frac{1}{\sqrt{2\sigma^2}} \right)^{NT} |\Omega|^{-1/2} \\ & \exp\left( -\frac{1}{2\sigma^2} (y - X\beta)' \Omega^{-1} (y - X\beta) \right) \end{aligned}$$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앞서의 임의효과모델에서 본 바와 같이 원자료의 변형을 이용한다. 즉  $\Omega = I_N \otimes A$ 이고  $|\Omega| = |I_N|^N$ ,  $|A|^N = |A|^N$ 이며,  $A$ 의 특성방정식의 근은  $1 - \rho + T\rho$ 와  $1 - \rho$ 이다. 또한 임의 행렬의 결정식(determinants)은 그 행렬의 특성방정식의 근의 곱이기 때문에  $|A| = [(1 - \rho + T\rho)(1 - \rho)^{T-1}]^N$ 이다. 따라서  $(y - X\beta)' \Omega^{-1} (y - X\beta)$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begin{aligned} (y - X\beta)' \Omega^{-1} (y - X\beta) &= \sum_{i=1}^N (y_i - X_i\beta)' A^{-1} (y_i - X_i\beta) & (4.32) \\ &= \sum_{i=1}^N \left( A^{-\frac{1}{2}} y_i - A^{-\frac{1}{2}} X_i\beta \right)' \left( A^{-\frac{1}{2}} y_i - A^{-\frac{1}{2}} X_i\beta \right) \end{aligned}$$

그러므로 로그우도함수(log likelihood function)는

$$\begin{aligned}
& \log L(\beta, \sigma_\mu^2, \sigma_\epsilon^2 | Y_{11}, \dots, Y_{1T}, Y_{21}, \dots, Y_{M1}, \dots, Y_{NT}) \quad (4.33) \\
& = -\frac{NT}{2} \log 2\pi - \frac{NT}{2} \log \sigma^2 \cdot -\frac{N}{2} \log(1 - \rho + T\rho) \\
& \quad - \frac{N(T-1)}{2} \log(1 - \rho) - \frac{1}{2\sigma^2} \sum_{i=1}^N \sum_{t=1}^T (Y_{it}^* - X_{kit}^* \beta)^2
\end{aligned}$$

한편  $\beta$ ,  $\sigma_\mu^2$ ,  $\sigma_\epsilon^2$  의 우도추정량은 위의 로그도우함수의 값을 최대로 만드는 1차 조건을 연립하여 풀어 구할 수도 있으나 그 결과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은 Grid search 방식을 사용한다. 즉 먼저  $\sigma^2$ 를 중심으로 우도함수를 단순화시킨다. 즉 위의 식(4.33)을  $\sigma^2$ 에 대해서 미분하여  $\sigma^2$ 의 추정치를 구한 후 그 추정치를 다시 식(4.33)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begin{aligned}
\log L(\beta, \rho, \dots) & = -\frac{NT}{2} (\log 2\pi + 1) - \frac{NT}{2} \log \hat{\sigma}^2 \quad (4.34) \\
& \quad - \frac{N}{2} \log(1 - \rho_{T\rho}) - \frac{N(T-1)}{2} \log(1 - \rho)
\end{aligned}$$

$$\text{단, } \hat{\sigma}^2 = \frac{\sum_{i=1}^N \sum_{t=1}^T (Y_{it}^* - X_{kit}^* \beta)^2}{NT}$$

따라서 식(4.34)에서 미지의 모수는 (4.33)과는 달리  $\rho$ 와  $\beta$ 로 줄어들게 되고 또한  $\rho$ 값이 이론적으로 0과 1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활용하여  $\rho$ 값을 0과 1사이에서 적절히 설정해 놓으면 결국 구하는 모수는  $\beta$ 뿐이며 우도함수를 최대로 만드는  $\hat{\beta}$ 값을 추정하기가 그 만큼 용이해 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rho$ 값을 0에서 1까지 변화시키면서 반복하여 우도함수의 값을 최대로 만드는  $\hat{\beta}$ 값을 찾는 것이다.

## 제 2 절 추정모형의 도입과 자료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12개 산업의 횡단면자료와 1991~2004년의 시계열자료를 결합(pooling)하여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실시한다. 이렇게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개별 횡단면자료의 특성과 연도별 자료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를 모두 사용한 패널자료를 사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추정방정식을 설정한다.

$$y_{it} = a_{1i} + \sum_{k=2}^K a_k \cdot x_{kit} + e_{it}, \quad i=1,2,\dots,N, \quad t=1,2,\dots,T \quad (4.35)$$

이때  $y_{it}$  은 N개의 횡단면자료와 T개의 시계열자료가 결합된 종속변수이며,  $x_{kit}$  역시 N개의 횡단면자료와 T개의 시계열자료가 결합한 설명변수이다.  $a_{1i}$  는 상수항(constant term)이며  $e_{it}$  는 평균 0, 분산  $\sigma^2$  인 확률오차(random error)로 가정한다. 이러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개별 횡단면자료의 특성과 연도별 자료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고, 또한 각각의 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하기 위해서이다.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식 (4.35)를 추정하는 방법은  $a_{1i}$  을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a_{1i}$  가 고정된 계수라고 한다면, 식(4.35)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더미변수모형 혹은, 공분산모형(covariance model))이 된다. 반면 만약  $a_{1i}$  가 임의적인(random) 확률변수라고 한다면,  $a_{1i}$  는  $a_{1i} = \bar{a}_1 + \mu_i$  로 다시 쓸 수 있다. 여기서  $\bar{a}_1$  는 알려지지 않은 계수이고,  $\mu_i$  는 평균이 0, 분산이 상수로서

독립적으로 분포하는 임의 변수(random variable) 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식 (4.35)를 일반화 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d method : GLS방법)에 의하여 추정하는 것을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또는 error component model)이라 한다.

식 (4.35)를 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하면 추정치의 효율성(efficiency)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하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확률효과모형은  $\mu_i$ 가 독립변수  $x$  와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추정하는 것이므로 만약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생략변수(omitted variables) 문제로 인하여 모형식별오차(model specification error)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을 같이 추정한다.<sup>37)</sup>

본고는 투자함수를 매출액, 이자비용, 법인세, 연도더미변수의 함수로, 고용함수를 매출액, 1인당 인건비, 법인세, 투자, 연도더미변수의 함수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추정모형을 도입한다. (Lee, young and Rorer H. Gorden. ; 2001)

$$inv_t = a_0 + a_1 sale_t + a_2 \cos t_t + a_3 tax_t + a_4 dummy_t \quad (4.36)$$

$$emp_t = a_0 + a_1 sale_t + a_2 wage_t + a_3 tax_t + a_4 inv_t + a_5 dummy_t \quad (4.37)$$

여기서  $inv$ 와  $emp$ 는 투자와 고용자 수를,  $sale$ 과  $wage$ 는 매출액과 1인당 인건비를,  $tax$ 는 조세부담을 의미한다. 모든 변수는 자연대수를 취한다.  $dummy$ 는 연도더미변수로 시계열 자료의 추세를 제거하기 위해 포함한다.  $t$ 는 1991~2004년까지의 기간을 나타낸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변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의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표4-1>에 제시한다.

---

37) 일반적으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각각 추정한 후 Hausman 검정방법으로  $\mu_i$ 와  $x$ 에 대한 상관관계를 검정하고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 임의효과모형의 추정결과를 사용하며, 만약 상관관계가 유의할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결과를 사용한다.

<표4-1> 자료의 변이계수 : 전체 기간

변수	임금	매출액	법인세	이자비용	고용자 수
광업	0.1025	0.1819	0.4944	0.5962	0.3829
축산업	0.2056	0.3235	0.7321	0.5417	0.4936
어업	0.2183	0.1905	0.6666	0.3379	0.5267
제조업	0.3824	0.4227	0.7532	0.4984	0.0798
건설업	0.2609	0.2846	0.4846	0.5949	0.1931
전기업	0.3880	0.6698	0.7843	0.6401	0.1972
운수업	0.2214	0.3938	0.9816	0.4610	0.1624
통신업	0.9297	0.6898	0.8091	0.9536	0.2799
도매업	0.6778	0.3729	0.8036	0.3807	0.0944
소매업	0.5809	0.5887	0.8424	0.4131	0.0358
음식업	0.3203	0.3182	0.6321	0.4032	0.0455
부동산업	0.5430	0.6426	0.7860	0.5851	0.2384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므로 변이계수가 크다는 것은 평균에 비해 편차가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의 변동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기간의 12개 산업에 대한 변이계수를 보여주는 <표4-1>에서 임금의 변이계수는 광업 0.1025, 축산업 0.2056, 어업 0.2183으로 1차 산업에서 낮은 수치를 보여 이들 산업에서 인건비 변화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운수업과 건설업도 0.2214, 0.2609로 상대적으로 낮아 운수업과 건설업의 인건비 역시 별다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업, 축산업, 어업, 운수업, 건설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 산업에 대한 노동수요 증가가 별다른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며 결국 이들 산업의 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통신업 임금의 변이계수는 0.9297로 대단히 커서 상당한

크기의 임금 변동이 이루어졌다. 임금변동이 크다는 사실이 그대로 높은 임금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임금과 물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통신업에서 임금상승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출액의 변이계수는 광업 (0.1819)과 어업 (0.1905)에서 특히 낮아, 임금에서와 마찬가지로 1차 산업부문에서 매출액 증가가 가장 낮다. 또한 통신업에서 변이계수가 0.6898로 가장 높아 통신업의 매출액 증가가 가장 크게 이루어졌다. 법인세와 이자비용의 경우 산업간 차이가 임금, 매출액, 고용자 수에 비해 크지 않으나 통신업의 이자비용이 특히 높아 통신업의 매출증가와 투자증가가 주로 차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 광업과 축산업의 이자비용의 변이계수가 다른 산업에 비해 작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 광업과 축산업의 임금과 매출액은 별다른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자 수의 변이계수는 소매업, 음식업, 도매업, 제조업에서 특히 낮아 이들 산업에서 고용의 변동이 별로 없거나 매출증가에 대한 고용창출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광업, 축산업, 어업의 변이계수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 산업에서 고용의 변화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광업, 축산업, 어업 3개 산업의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거나 혹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표4-2>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에 대한 변이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기간에 대한 변이계수를 보여주는 <표4-1>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변이계수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전의 기간에 비해 2000년 이후에 변수들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변이계수가 전체 기간에는 임금, 매출액, 법인세, 이자비용, 고용자 수가 각각 0.3824, 0.4227, 0.7352, 0.4984, 0.0798인데 2000년 이후에는 0.1764, 0.1494, 0.3618, 0.3546, 0.0033이다. 그런데 광업과 축산업의 이자비용의 변이계수가 전체 기간과 2000년 이후의 기간에 큰 차이가 없어서 광업과 축산업의 이자부담이 2000년 이후에도 줄지 않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신업의 경우 전체 기간과 2000년 이후의 기간의 차이가 대단히 크다. 이것은 2000년 이후의 기간에 통신업의 성장속도가 크게 떨어진 데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4-2> 자료의 변이계수 : 2000-2004년

변수	임금	매출액	법인세	이자비용	고용자 수
광업	0.1184	0.0902	0.4287	0.4359	0.0426
축산업	0.0504	0.1108	0.0383	0.4659	0.0509
어업	0.0745	0.0795	0.4277	0.1541	0.1922
제조업	0.1764	0.1494	0.3618	0.3546	0.0033
건설업	0.1199	0.1661	0.3914	0.3242	0.0618
전기업	0.1249	0.2702	0.1672	0.1584	0.0472
운수업	0.1439	0.1699	0.7210	0.1019	0.0130
통신업	0.0866	0.0816	0.0791	0.0413	0.0610
도매업	0.3282	0.1057	0.0920	0.1210	0.0244
소매업	0.2023	0.1409	0.0740	0.1060	0.0340
음식업	0.1233	0.0648	0.1927	0.2944	0.0055
부동산업	0.3473	0.4406	0.6262	0.3454	0.0799

## 제 3 절 법인세의 투자효과에 대한 패널분석

### 1. 전체기업

<표4-3>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에 대해 패널분석(panel analysis)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패널분석은 크게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구분되므로 두 개의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것은 어느 모형이 보다 우수한가를 검정통계량을 이용하여 판별한 후 우수한 모형에 근거한 결과만을 제시하는 경우 추정계수들을 비교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단점 외에도 두 모형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료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 다르게 나타나며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경우도 많다.

<표4-3>의 패널모형에서 모형 1은 연도더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고, 모형 2는 연도더미를 포함한 모형을 나타낸다.

<표4-3>에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에 관계없이 모형 1의 경우 매출액, 이자비용, 법인세 변수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모형 2에서는 이자비용만 유의하고 매출액과 법인세는 유의하지 않다. 이것은 투자함수를 추정할 때 모형 1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1에서 매출액의 부호는 양으로서 매출액 증가가 투자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자비용은 음의 부호로 이자비용의 증가가 투자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자비용 계수보다 매출액 계수의 크기가 더 커서 투자가 이자비용보다는 매출액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법인세 역시 예상대로 음의 부호이다. 이것은 법인세 부담의 증가가 투자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구조와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석기간을 2000년 이전의 기간과 이후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

<표 4-3>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패널분석결과 : 1991-2004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매출액	2.2389* (9.8241)	0.1713 (1.6192)	2.1791* (9.7617)	0.1917 (1.8549)
이자비용	-0.5453* (-5.8841)	-0.1400* (-4.0908)	-0.5347* (-5.8641)	-0.1438* (-4.2895)
법인세	-0.2699* (-2.4826)	-0.0387 (-1.0355)	-0.2811* (-2.6289)	-0.0411 (-1.1213)
연도더미		0.2396* (28.25)		0.2373* (28.72)
결정계수	0.8067	0.9785	0.8064	0.9785

주: \*는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표4-4>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에 대해 패널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도더미를 제외한 모형 1의 경우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에 관계없이 전체 기간을 추정한 <표4-3>의 모형 1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매출액은 양의 부호로 5%에서 유의하며 이자비용과 법인세는 음의 부호로 5%에서 유의하다. 그러나 연도 더미를 포함하는 모형 2의 경우 연도더미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하지 않다. 매출액, 이자비용, 법인세 모두가 투자를 설명하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형 2에 의한 투자 설명은 무의미하며 따라서 투자함수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모형 1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4>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패널분석결과 : 1991-1999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매출액	0.9160* (5.3929)	0.0407 (0.6225)	0.8554* (5.2163)	0.0545 (0.8652)
이자비용	-0.1789* (-2.1597)	0.0174 (0.6318)	-0.1987* (-2.4709)	0.0145 (0.5456)
법인세	-0.2634* (4.3297)	0.0027 (0.1253)	-0.2610* (4.3995)	0.0070 (0.3252)
연도더미		0.1886* (23.45)		0.1857* (24.13)
결정계수	0.8414	0.9844	0.8408	0.9843

주: ‘\*’은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표4-5>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에 대해 패널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4-4>의 결과와 같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에 대해 추정 한 <표4-5>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연도더미가 포함된 모형 2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에서 더미변수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지 못해 모형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법인세가 음의 부호를 가졌으나 유의하지 않으며 고정효과모형에서는 매출액이 음의 부호를 가졌다.

이에 비해 모형 1에서는 매출액은 양의 부호로 유의하며, 이자비용은 음의 부호로 5%에서 유의하다. 특히 이자비용 계수의 크기가 전반기에 비해 대단히 커서 2000년 이전의 기간에 비해 2000년 이후에는 이자비용이 투자를 크게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이자부담에 훨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는 음의 부호를 가져 법인세 부담이 투자를 억제하나 유의하지 않아 2000년 이후에 있어서 법인세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00년 이후에 한국의 산업은 이자에 민감하여지고 법인세에 둔감하여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4-5>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패널분석결과 : 2000-2004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매출액	1.2422* (3.3005)	-0.0106 (-0.0557)	0.9756* (4.2024)	0.0624 (0.3597)
이자비용	-0.9631* (-5.8850)	0.0225* (0.2077)	-0.9752* (-7.8444)	-0.0069 (-0.0691)
법인세	-0.0036 (-0.0218)	-0.0022 (-0.0324)	-0.0476 (-0.3214)	-0.0041 (-0.0633)
연도더미		0.3167* (11.72)		0.3039* (12.27)
결정계수	0.7061	0.9502	0.6997	0.9497

주: \*는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 2. 산업별

이제 산업별로 구분하여 조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표4-6>은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통신업의 조세부담과 투자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4-6>에서 모형 1과 모형 2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더미변수를 포함하는 모형 2에서는 매출액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즉 t통계량이 유의수준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0.9339, 확률효과모형에서는 1.2701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모형 1은 모든 변수가 유의하다. 모형 1에 의할 경우 매출액 1%의 증가는 투자를 1.96-1.93% 증가시키고 이자비용

의 1% 증가는 투자를 0.40% 감소시킨다. 이자비용의 변화보다 매출의 변화가 투자를 약 5배 정도 더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인세가 음의 부호로 유의하여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통신업에 대한 투자는 법인세 부담에 대해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 부담의 계수 0.2920이 이자비용의 계수 0.4035보다 작아 법인세 보다 이자에 더 큰 부담을 느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표4-6>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통신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패널분석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매출액	1.9642* (8.6648)	0.1519 (0.9339)	1.9286* (8.8077)	0.1957 (1.2701)
이자비용	-0.4035* (-4.7194)	-0.1087* (-2.5128)	-0.3968* (-4.7883)	-0.1158* (-2.8023)
법인세	-0.2920* (-2.2955)	-0.1737* (-3.0443)	-0.3064* (-2.4889)	-0.1746* (-3.1849)
연도더미		0.2227* (14.17)		0.2179* (14.70)
결정 계수	0.9040	0.9814	0.9039	0.9814

주: “\*”은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광업, 어업, 축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패널분석을 보여주는 <표4-7>에서 결정 계수는 모형 2가 모형 1보다 더 커서 모형 2가 모형 1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연도더미 변수를 추가한 결과이다. 그런데 모형 2의 경우 매출액 변수의 계수가 5%에서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 모형 1의 경우에는 법인세 변수가 유의하지 않다. 결국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매출액 계수가 무의미한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형 2보다는 모형 1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형 1에 의할 경우 매출액 변수는 양의 변수로 유의하며 이자비용은 음의 변수로 유의하다. 그리고 법인세 변수는 음의 부호를 가지나 유의하지 않다. 이 경우

유의성을 떠나 법인세 계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체 기간에 비해 이자비용은 더 크고 법인세는 더 작아졌다. 따라서 전체 기간으로 보면 법인세가 투자억제 작용을 하나 2000년 이전의 기간에서는 법인세가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4-7> 광업, 어업, 축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패널분석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매출액	2.5520* (4.4366)	0.0745 (0.5390)	2.4026* (4.4408)	0.0753 (0.5745)
이자비용	-0.7684* (-3.3036)	-0.2931* (-6.1314)	-0.7426* (-3.3675)	-0.2929* (-6.4699)
법인세	-0.1902 (-0.8646)	-0.0816* (-1.9709)	-0.2226 (-1.0670)	-0.0806 (-1.9594)
연도더미		0.2475 (30.327)		0.2472* (31.988)
결정 계수	0.6707	0.9879	0.6698	0.9879

주: \*는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패널분석을 보여주는 <표4-8>에서 모형 2의 경우 매출액 변수의 t통계량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1.0453, 확률효과모형에서는 1.3361로 유의하지 않으며, 법인세 계수 역시 각각 1.4819, 1.6735로 5%에서 유의하지 않다. 모형 2에서는 연도더미 외에 이자비용만 유의하다. 이에 비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에서 모형 1의 모든 계수는 유의하고 부호 역시 예상과 일치한다. 따라서 모형 1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모형 1에 의할 경우 매출액 변수는 양의 변수로 유의하며 이자비용과 법인세 부담은 음의 변수로 유의하다. 법인세가 이들 산업에 투자억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4-8>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패널분석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매출액	1.8126* (11.990)	0.1228 (1.0453)	1.7928* (12.255)	0.1493 (1.3361)
이자비용	-0.4895* (-4.6536)	-0.2234* (-5.0873)	-0.4883* (-4.7826)	-0.2276* (-5.4021)
법인세	-0.2761* (-4.7315)	-0.0396 (-1.4819)	-0.2795* (-4.9384)	-0.0429 (-1.6735)
연도더미		0.2461* (16.615)		0.2425* (17.236)
결정계수	0.8952	0.9845	0.8951	0.9845

주: ‘\*’은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 제 4 절 법인세의 고용효과에 대한 패널분석

### 1. 전체기업

<표 4-9>는 전체 기간과 전체 산업의 고용에 대해 조세부담을 패널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함수는 투자함수와 마찬가지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그러나 연도더미를 고려한 모형 1, 모형 2 대신에 개별효과모형과 시간효과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것은 투자함수는 추세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고용은 추세성격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며, 산업간 성격에

초점을 두는 개별효과모형과 시간의 경과에 따르는 효과에 비중을 두는 시간효과 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잘못된 결과를 받아들이는 잘못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률효과모형의 추정 결과는 고정효과모형에 비해 좋지 않다. 확률효과모형에서 개별효과모형의 경우 투자변수만 유의하며 시간효과모형의 경우 모든 변수가 유의하지 않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 개별효과모형의 모든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데 비해 시간효과모형에서는 투자를 제외한 변수들이 모두 유의하다.

고정효과모형의 시간효과에서 매출액과 법인세는 각각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가져 예상에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의 부호는 양으로 나타나 임금상승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임금상승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의 증가가 고용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임금상승의 고용감축효과가 상쇄되어 순효과는 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최소한 임금의 고용감축효과가 대단히 작거나, 임금상승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 인하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9> 조세부담과 고용의 패널분석 : 1991-2004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개별효과	시간효과	개별효과	시간효과
매출액	0.2027 (1.2988)	0.8352* (4.3832)	0.2832 (1.9046)	0.0624 (0.3597)
임금	0.0660 (0.8119)	0.3106* (2.4615)	0.0549 (0.6931)	0.0069 (0.0691)
법인세	-0.0746 (-1.0151)	-0.2364* (-2.4873)	-0.0616 (-0.8600)	-0.0041 (-0.0633)
투자	0.2523 (1.7663)	-0.2396 (-0.0054)	0.2814* (2.0211)	0.3993 (1.4427)
결정 계수	0.9685	0.9001	0.9682	0.8907

주: ‘\*’는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표 4-10>은 산업간 고용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에 대한 분산분석 (ANOVA : Analysis of Variance)의 결과를, <표 4-11>은 시간에 따른 고용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에 대한 ANOVA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ANOVA를 통해 전 산업의 고용 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다르지 않으나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0> 고용의 분산분석표 : 개별

변인(source)	제곱합(SS)	평균제곱합(MS)	F	유의수준
처리(indi)	24.461	3.4945	16.121	0.00000
오차(error)	22.544	0.2167		
전체(total)	47.005			

<표 4-11> 고용의 분산분석표 : 시간

변인(source)	제곱합(SS)	평균제곱합(MS)	F	유의수준
처리(time)	13.000	0.4778	1.1479	0.32961
오차(error)	40.793	0.4162		
전체(total)	47.005			

<표 4-12>는 2000년 이전 기간의 고용구조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선택에 있어서 고정효과모형의 개별효과는 모든 변수가 유의하지 않으며, 확률효과모형의 개별효과는 투자 변수만 유의하다. 또한 고정효과모형의 시간효과에서는 모든 변수가 유의하나 확률효과모형의 시간효과에서는 매출액 변수가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의 시간효과모형을 선택한다. 전체 기간을 분석한 <표 4-9>와의 차이는 조세부담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표 4-12> 조세부담과 고용의 패널분석 : 1991-1999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개별효과	시간효과	개별효과	시간효과
매출액	0.1602 (0.8638)	0.5951* (2.1230)	0.2928 (1.4394)	0.1529 (0.8773)
임금	0.2929 (1.7312)	0.3808* (2.1381)	0.5311* (3.6534)	0.3505* (2.2672)
법인세	-0.3084 (-0.2014)	-0.1635* (-2.4668)	-0.0715 (-0.7322)	-0.3117* (-4.5196)
투자	-0.1475 (-0.0025)	0.3146* (2.5645)	0.2532* (1.9682)	0.3148* (2.6819)
결정 계수	0.8793	0.9847	0.8316	0.9646

주: ‘\*’은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표 4-13>은 2000년 이전 기간에 대해 산업간 고용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에 대한 분산분석 (ANOVA : Analysis of Variance)의 결과를, <표 4-14>는 2000년 이전 기간에 대해 시간에 따른 고용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에 대한 ANOVA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고용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다르지 않으나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3> 고용의 분산분석표 : 개별(1991-1999년)

변인(source)	제곱합(SS)	평균제곱합(MS)	F	유의수준
처리(indi)	25.078	3.5826	37.448	0.00000
오차(error)	6.1228	0.0956		
전체(total)	31.201			

<표 4-14> 고용의 분산분석표 : 시간(1991-1999년)

변인(source)	제곱합(SS)	평균제곱합(MS)	F	유의수준
처리(time)	8.0000	0.0654	0.1343	0.99741
오차(error)	30.678	0.4869		
전체(total)	31.201			

2000년 이후의 고용구조를 추정한 <표 4-15>에서 고정효과모형의 개별효과에서 모든 변수가 유의하지 않으며 확률효과모형의 개별효과에서는 매출액과 법인세가 유의하지 않다. 이에 비해 시간효과모형에서는 투자만 유의하지 않아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시간효과모형을 선정한다.

고정효과모형의 시간효과에서 매출액은 양의 부호로 매출액의 증가는 고용을 증가시킨다. 이에 비해 법인세 부담은 음의 부호로 법인세 부담의 증가는 고용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결과 2000년 이전의 기간을 추정한 <표 4-12>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계수가 이전의 계수보다 훨씬 더 크다. 2000년 이후의 매출액과 법인세의 계수는 1.0717, 0.5973인데 비해 2000년 이전의 매출액과 법인세 계수는 0.5951, 0.1635이다. 이것은 매출액과 법인세 부담의 변동에 대해 고용을 조정하는 규모가 2000년 이후 훨씬 더 커졌다는 것 즉 우리 사회의 고용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5> 조세부담과 고용의 패널분석 : 2000-2004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개별효과	시간효과	개별효과	시간효과
매출액	0.0226 (0.0678)	1.0717* (5.5114)	0.3518 (1.3829)	1.1004* (6.0578)
임금	0.2565 (1.9255)	0.4494* (3.0396)	0.2700* (2.1793)	0.4122* (3.0051)
법인세	-0.0074 (-0.0585)	-0.5973* (-5.5606)	-0.0291 (-0.2496)	-0.5913* (-5.8559)
투자	-0.4288 (-1.6568)	-0.3632 (-0.0072)	-0.5919* (-2.6536)	-0.6071 (-1.8407)
결정 계수	0.9910	0.9597	0.9906	0.9532

주: ‘\*’은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표 4-16>과 <표 4-17>의 ANOVA는 2000년 이후의 기간에도 산업별 차이는 있으나 시간에 따른 차이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6> 고용의 분산분석표 : 개별(2000-2004년)

변인(source)	제곱합(SS)	평균제곱합(MS)	F	유의수준
처리(indi)	3.8714	0.5531	6.6809	0.00006
오차(error)	2.6491	0.0828		
전체(total)	6.5205			

<표 4-17> 고용의 분산분석표 : 시간(2000-2004년)

변인(source)	제곱합(SS)	평균제곱합(MS)	F	유의수준
처리(time)	4.0000	0.1157	0.6689	0.61786
오차(error)	6.0574	0.1731		
전체(total)	6.5205			

## 2.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통신업의 고용의 조세부담을 패널분석한 <표 4-18>에서 4개의 모형 모두 투자는 신뢰할 수 없는 변수이다. 또한 임금은 시간효과모형에서 유의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개별효과를 이용하여 분석을 한다.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통신업 4개 산업에서 매출액의 고용탄력성은 약 0.28로서 매출액이 1% 증가할 경우 고용은 0.28% 증가하여 비교적 낮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는 음의 부호로 법인세 부담이 이들 산업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통신업의 조세부담과 고용 패널분석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개별효과	시간효과	개별효과	시간효과
매출액	0.2789* (3.7997)	1.4668* (10.192)	0.2861* (4.0638)	1.4810* (11.175)
임금	0.0763* (2.2551)	-0.1039 (-1.0656)	0.0756* (2.3240)	-0.1047 (-1.1428)
법인세	-0.1181* (-2.5872)	-0.3163* (-2.7759)	-0.1208* (-2.7584)	-0.3686* (-3.6183)
투자	0.0866 (1.1832)	-0.5951 (-0.0244)	0.0879 (1.2508)	0.4729 (1.0914)
결정 계수	0.9948	0.9679	0.9948	0.9659

주: \*는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표 4-19>와 <표 4-20>의 ANOVA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통신업의 고용 구조는 이들 산업간에 차이는 존재하며 시간에 흐름에 따라 고용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9>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통신업의 고용 분산분석표 : 개별

변인(source)	제곱합(SS)	평균제곱합(MS)	F	유의수준
처리(indi)	4.7169	1.5723	10.532	0.00001
오차(error)	7.7625	0.1493		
전체(total)	12.479			

<표 4-20>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통신업의 고용 분산분석표 : 시간

변인(source)	제곱합(SS)	평균제곱합(MS)	F	유의수준
처리(time)	13.000	0.4965	3.4618	0.00110
오차(error)	6.0243	0.1434		
전체(total)	12.479			

<표 4-21>의 광업, 어업, 축산업의 조세부담과 고용의 패널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개별효과에서는 매출액, 임금, 법인세, 투자 어떤 변수도 유의하지 못하다. 결정계수도 상당히 낮다. 시간효과에서도 법인세 변수만이 5%에서 유의하다. 또한 법인세의 계수도 0.36-0.43으로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통신업 보다 더 크다. 이것은 매출액과 투자 등이 광업, 어업, 축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것과 법인세 부담이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통신업에 비해 더 크게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것 그리고 광업, 어업, 축산업에서의 고용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1> 광업, 어업, 축산업의 조세부담과 고용 패널분석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개별효과	시간효과	개별효과	시간효과
매출액	0.1112 (0.1729)	-1.0475 (-1.1876)	0.0350 (0.0578)	-0.5477 (-0.8691)
임금	0.9792 (1.6332)	0.3948 (0.5158)	0.8400 (1.5076)	0.0405 (0.0743)
법인세	0.0406 (0.2323)	-0.4349* (-2.2970)	0.0784 (0.4816)	-0.3603* (-2.5067)
투자	0.3219 (0.7725)	1.2963 (0.0310)	0.3125 (0.7918)	0.2413 (0.5488)
결정계수	0.3631	0.3973	0.3652	0.1164

주: ‘\*’은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표 4-22>와 <표 4-23>의 ANOVA는 광업, 어업, 축산업 이들 산업간에 고용구조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용패턴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 역시 기각에 실패하고 있다.

<표 4-22> 광업, 어업, 축산업의 고용 분산분석표 : 개별

변인(source)	제 곱합(SS)	평균제 곱합(MS)	F	유의수준
처리(indi)	0.6157	0.3078	0.9563	0.39313
오 차(error)	12.556	0.3219		
전 체(total)	13.172			

<표 4-23> 광업, 어업, 축산업의 고용 분산분석표 : 시간

변인(source)	제 곱합(SS)	평균제 곱합(MS)	F	유의수준
처리(time)	13.000	0.2743	0.7996	0.65548
오 차(error)	9.6058	0.3430		
전 체(total)	13.172			

<표4-24>의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업의 경우 시간효과와 결정계수는 고정효과모형 0.3186, 확률효과모형 0.0545로 대단히 낮으며, 시간효과와 모든 변수가 5%에서 유의하지 않아 모형으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별효과는 결정계수도 높고 임금과 법인세가 유의하다. 그러나 법인세 계수가 음의로서 대단히 작아 법인세 부담이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거나 그 감소폭은 대단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매출액이 유의하지 않아 매출증가가 이들 산업의 고용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표 4-24>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업 조세부담과 고용의 패널분석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개별효과	시간효과	개별효과	시간효과
매출액	0.0044 (0.0541)	0.1161 (0.3755)	0.0098 (0.1248)	0.2908 (1.9233)
임금	0.2395* (2.6512)	0.4695 (0.8335)	0.2353* (2.7254)	-0.0337 (-0.1578)
법인세	-0.0553* (-2.4915)	-0.2697 (-1.6900)	-0.0551* (-2.5867)	-0.0506 (-0.6280)
투자	0.0474 (0.8001)	0.6455 (0.0139)	0.0486 (0.8563)	0.0863 (0.7245)
결정계수	0.9816	0.3186	0.9816	0.0545

주: “\*”은 5%에서 유의함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량임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업의 고용 분산분석 결과인 <표4-25>와<표 4-26>에서 개별 산업의 처리간 차이가 없다는 가설은 기각되고 시간의 처리간 차이가 없다는 가설은 기각에 실패하였다. 이것은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업 4개 산업간 고용구조는 다르나 시간이 경과하여도 고용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5>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의 고용 분산분석표 : 개별

변인(source)	제곱합(SS)	평균제곱합(MS)	F	유의수준
처리(indi)	17.332	5.7775	220.16	0.00000
오차(error)	1.3645	0.0262		
전체(total)	18.697			

<표 4-26>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의 고용 분산분석표 : 시간

변인(source)	제곱합(SS)	평균제곱합(MS)	F	유의수준
처리(time)	13.000	0.0223	0.0509	0.99999
오차(error)	18.407	0.4382		
전체(total)	18.697			

## 제 5 절 시사점

지금까지 패널분석을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투자의 경우 패널분석은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패널모형은 연도더미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00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산업별로 구분하여 조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투자에 대한 패널분석결과 법인세부담은 음의 부호로(고정효과모형의 경우 탄력성은 -0.2699, 확률효과모형의 경우 탄력성은 -0.2811) 모두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이후 보다는 2000년 이전이 기업에게 있어서 조세부담이 투자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이후 부터는 법인세보다는 이자비용이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통신업이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업에 비해 조세부담 탄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업, 어업, 축산업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대적인 세부담 수준은 별개로 하고 현행 기업의 산업별 상대적인 세부담의 차이만 본다면 현행 상대적인 세부담의 정도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고용의 경우 패널분석은 투자패널분석과 마찬가지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그러나 연도더미를 고려한 모형1, 모형2 대신에 산업간 성격에 초점을 두는 개별효과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효과에 비중을 두는 시간효과 모형으로 구분 하였다. 또한 고용에 대한 ANOVA 분석을 추정하였다.

고용에 대한 패널분석결과 전체기간의 경우 법인세부담은 음의 부호(시간효과 의 경우 탄력성은  $-0.2364$ )로 조세부담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으나, 산업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의 패널분석 결과와는 반대로 2000년 이전 보다는 2000년 이후가 기업에게 있어서 조세부담이 고용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통신업의 매출액의 고용탄력성은 약 0.28로서 매출액이 1% 증가할 경우 고용은 0.28% 증가하여 비교적 낮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는 음의 부호로 법인세 부담이 이들 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OVA 분석결과 산업간의 차이는 존재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용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나타났다. 광업, 어업, 축산업의 경우 조세부담 탄력성은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0.4349$ , 확률효과모형의 경우  $-0.3603$ 으로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통신업에 비해 더 크게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20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법인세율 인하추세와 인근에 있는 경쟁국들의 낮은 세율정책 등이 이러한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설비투자 증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의 필요성, 국제자본 유치에 위한 주변 국가와의 경쟁 등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가 되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의 기업의 조세부담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991년의 약 22% 수준에서 하락하는 양상을 지속하다가 1990년대 말부터는 약간 증가하여 2003년에는 1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1991년의 약 17% 수준에서 1995년까지는 변동이 없었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3년에는 약 18% 수준 이었다.

중간값 기준으로 조세부담을 계산한 자료를 살펴보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법인의 조세부담 비율은 약30%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1998년에는 20%미만이었으나 최근에는 미미하지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를 다소 상회하고 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초의 15% 수준에서 점차 낮아져 1998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최근에는 20% 전후로 증가하였다

산업별 조세부담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사업의 유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건설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사업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후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의 세부담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종 조세감면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도소매업의 경우

영업이익 및 순이익 대비 25~28%의 높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내의 업종간 차이를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종은 세부담이 높은 반면 전자부품업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간의 세부담 격차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중반에는 10%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그 차이가 감소하여 약 4~6%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업종간 세부담 차이가 적은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업종간 세부담 격차의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부담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G7국가가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시점별로 5~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는 대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는 높았으나 일본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대비 평균유효세율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G7국가의 경우에, 영업이익 기준하에서는 영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체로 1999년 이후 계속적으로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 기준으로는 영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순이익 기준하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대체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효법인세율의 추세와 더불어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한 결과를 보면, 투자의 경우 1991년부터 2004년까지 법인세 부담은 음의 부호(고정효과모형의 경우  $-0.2699$ , 확률효과모형의 경우  $-0.2811$ )로 나타나 이것은 법인세 부담의 증가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경우 법인세부담은 고정효과의 경우  $-0.2634$ , 확률효과모형의 경우  $-0.2610$ 으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경우 법인세는 음의 부호(고정효과모형의 경우  $-0.0036$ , 확률효과모형의

경우 -0.0041)를 가져 법인세 부담이 투자를 억제하나 유의하지 않아 2000년 이후에 있어서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별 조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통신업의 경우 법인세부담 탄력성이 -0.2920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업, 어업, 축산업은 -0.0816 그리고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업은 법인세부담 탄력성이 -0.2761로 나타나 산업별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에 대한 패널분석결과 전체기간의 경우 법인세부담은 음의 부호(시간효과 의 경우 탄력성은 -0.2364)로 조세부담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 조세부담을 살펴보면 특히 투자의 패널분석 결과와는 반대로 2000년 이전(시간효과 의 경우 탄력성은 -0.1635)보다는 2000년 이후(시간효과 의 경우 탄력성은 -0.5973)가 기업에게 있어서 조세부담이 고용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조세부담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업, 어업, 축산업의 경우 법인세부담 탄력성이 -0.4349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통신업은 탄력성이 -0.3163 그리고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업은 법인세부담 탄력성이 -0.055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NOVA 분석결과 산업간의 차이는 존재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용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절대적인 세부담 수준은 별개로 하고 현행 기업의 산업별 상대적인 세부담의 차이만 본다면 현행 상대적인 세부담의 정도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기업의 세부담 수준이 적정한가라는 논란과 전반적인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기업의 세부담 완화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적어도 투자를 촉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효과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세부담을 보다 세분화하여 투자세액공제, 감면조항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형태의세부담 완화가 투자에 가장 효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작업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고용의 경우 산업별로 조세부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에 대한 고용과 직접 관련된 세제상의 혜택이나 고용 창출보조금,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완화 등의 개별조치가 고용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 항목별로 실증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이 또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고종권. “조세부담의 측정치에 관한연구,” 『회계학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회계학회, 2001.
- 곽태원. 『조세론』, 법문사, 2001.
- 곽태원·정승태. “조세정책과 법인기업 재무구조,” 『공공경제』, 3권2호, 1998.
- 권순철. “중소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혁방안,” 『세무학연구』, 제7호, 2000.
- 김송윤. “기업의 조세부담 측정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7.
- 김용훈. “조세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5호.
- 김유찬. “경제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감세정책의 모색,” 『세무학회』, 2004.
- 김유찬. “경제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감세정책의 모색,” 세무학회 발표자료, 2003. 10.
- 김진수·박형수·안중석.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 김현숙.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포럼』, 제98호, 2004. 8.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노현섭.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관계,” 『세무학연구』 제6호, 한국세무학회, 200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최신 중국조세제도 변화추이』, 200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최신 중국조세제도 해설집』, 2003.

- 말레이시아 산업개발국, [www.mida.gov.my](http://www.mida.gov.my).
- 박기백 외. “투자(R&D설비) 지원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박기백·김진. “법인세 부담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4. 12.
- 박기백. “미시자료로 「분석한 법인의 세부담,”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3년 7월호(제85호).
- 박기백·정재호. “조세감면의 합리화와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 박승학. “기업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경제학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0.
- 박형수.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쟁점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4. 12.
- 서진교. “패널자료 분석방법,” 『농촌경제』, 2001. 제24권, 제2호.
- 신경미. “기업특성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 전남대학교 회계학 석사학위논문, 2001.
- 신승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0.
- 안숙찬.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세무학연구』, 제8호(2003.10).
- 안종석·최준욱.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성과 및 향후 운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8.
- 안종석. “경제성장 및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조세연구원』, 2004. 5.
- 안종석.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분석,” 『재정연구』, 제5권 2호.
- 안종석. “조세정책이 대내외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94-12,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안종석. “우리나라 주요 경쟁국의 유효법인세율 비교분석,” 『한국세무학회』, 2004.

- 양재선 · 박철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2004. 6.
- 윤건영 · 임주영.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3.
- 이계원. "조세공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무학연구』, 제18권 제2호, 2001.
- 이만우.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지원효과," 『경영논총』, 2001.
- 이만우. "법인세법상 각종 세제혜택의 재무적 효과측정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 21권, 2001.
- 이만우. "우리나라의 법인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1호.
- 이상돈. "법인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이세용 · 이창우.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효과에 대한연구," 『경제학연구』, 제 20권 제1호, 2003.
- 이옥진. "고용창출을 위한 선택적 차별과세," 『한국조세연구원』. 2004. 1.
- 이우택 · 이철재. 『조세법과 세무회계』, 서울 : 조세통람사, 1993.
- 이윤재 · 김경표.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를 촉진시키는가," 『산업경제연구』, 제17권 제5호, 2004.
- 이준규. "평균유효법인세율에 의한 법인세제 특례규정의 유효성," 『세무학연구』, 제3호, 2003.
- 이철인 · 전용준. "고용관련조세 · 재정정책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1.
- 이철인. "고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세 · 재정정책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12.
- 이현주. "조세부담과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6.
- 전규안. "법인세부담의 공평성과 기업특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전규안. "기업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2권. 2004.
- 전영준. "GCE 모형을 이용한 법인세의 성장 및 분배효과 분석," 『한국은행』 경제분석 제9권 2호, 2003.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4. 9.

중앙일보, “정부실업률통계 현실반영 못한다”, 2003. 10.

통계청, 『법인세신고보고서』, 2001.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각 호.

한국수출입은행. 『싱가포르 투자가이드』, 2005.

한국은행. 『2003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한국은행  
조사국, 2004.

한국조세연구원. 『조세관련통계자료집』, 2000.

한국조세연구원. “OECD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재정포럼』 통권65호, 2005. 1.1

현종권. “한계유효세율을 통해 본 우리나라 세부담 추이,” 『한국조세연구원』,  
2001. 5.

## 2. 외국문헌

Ahmed, s.. "Modelling Coporate Tax Liabilities Using Company Accounts."  
CWPE 04012, January 2004.

Auerbach, A.j.. "Tax Policy and Business Fixed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conomics, Vol. 105 2004.

Callihan, D.,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 A Synthesis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2000.

Eisner, R.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60, 2003.

Eisner, R., " Investment Behavior and Neoclassical Theory", Review

-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0, 2003.
- Hall, R. E. and D. W. Jorgenson, " Tax Policy and Inves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ssociation 1994.
-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5.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05.
- Joint Committee on Taxation, Study of 1983 Effective Tax Rates of Selected Large U.S. Corporation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 Jorgenson, D. W. and M. A., Sullivan, "Inflation and Corporate Capital Recovery," in C. R. Hulten (ed), Depreciation, Inflation, and taxation of Income form Capital, Washington: The urban Institute press, 1981.
- King, M. A. and D. Fullerton,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ed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Kothari, S. P. "Captial Markets Research in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1, 2001.
- Lambert, R. A., "Contracting Theory and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2, 2001.
- Lee, Charles M. C., "Market Efficiency and Accounting Research: A Discussion of ' Capital Market Research in Accounting' by S. P. Kothari,"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1, 2001.
- Lee, young and Rorer H. Gorden. 『Tax Structure and Economic Growt h.』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mimeo, 2003.
- Magge, Robert P., "Discussion of Contraction Theory and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2, 2001.
- Manzon, G., "The role of taxes in early debt retir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2, 2001.
- Mckee, M. J., J. J. C. Visser and P. G. Saunders, "Margianl Tax Rates on

- the Use of Labour and Capital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No. 7, 1986.
- Mendoza, E. G., A. Razin and L. L. Tesar, “Effective Tax Rates in Macroeconomics: Cross-Country Estimates of Tax Rates on Factor Incomes and Consumption,” NBER Working Paper 4864, September 1994.
- Mills, Lillian F., “Book-Tax Difference and Internal Revenue Service Adjust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6, 1998.
- OECD, *Taxing Profits in a Global Economy*, Paris: OECD, 2000.
- OECD, “A Critical Survey, OECD Tax Policy Studies,” *Effective Tax Rates*, No. 5, 2000.
- OECD. “A Note on The Interpretation of Tax/GDP Ratios,” Working Party No. 2, on Tax Policy Analysis and Tax Statistics, 1999.
- OECD, *Average Effective Tax Rates and Capital, Labour and Consumption*, 2000.
- OECD, “Effective Tax Rates: First Quantitative Results,” Working Party No. 2 on Tax Policy Analysis and Tax Statistics, 1999.
-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2004.
- OECD, “On The Use of Micro-Data to Assess Average Tax Rate,” Working Party No. 2 on Tax Policy Analysis and Tax Statistics, 1999.
- OECD, *Revenue Statistics*.
- P.J. WILKIE. “Corporate Average Effective Tax Rates and Inferences about Relative Tax Preference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0, 1988(Fall).
- R. Hagarman and M. Zmijewski. “An Income Strategy Approach to the Positive Theory of Accounting Standard Setting /Choice.” *Journal of Economics* 3,

1981 (August).

Shevlin, T. "Estimating Corporate Marginal Tax Rates with Asymmetric Tax Treatment of Gains and Loss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90.

Summers, L. H., *Capital Income Taxation as Resource Allocation*, North-Holland, Amsterdam, 2004.

Xu, Jing., "Tax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A Cross-Country Comparison and Model Sensitivity Analysis,"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Working Paper No. 97-02, 2003

Zimmerman, J., "Taxes and Firm Size," *Th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 1999.

# 부 록

<부표 1> 업종별 법인세 부담 추이

(단위 %) )

업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음/식료업	순이익	28.0	24.4	25.8	27.5	27.6	25.5	24.7	21.6	22.0	24.6	23.3	22.4	22.8	22.9
	영업이익	12.8	11.5	12.0	13.6	12.0	11.5	9.2	10.1	15.3	17.3	17.2	19.2	19.8	19.8
담배	순이익	-	-	26.0	29.8	-	30.3	28.3	23.0	-	32.7	23.1	26.8	14.1	20.1
	영업이익	-	-	40.4	43.7	-	44.7	41.6	36.1	-	30.0	21.3	25.8	13.2	18.1
섬유제품	순이익	26.9	24.5	23.2	23.2	23.2	21.2	22.2	19.9	17.1	20.3	20.7	20.3	20.5	20.6
	영업이익	11.7	10.7	10.4	12.8	12.7	9.3	7.9	10.8	13.6	13.5	15.2	14.6	14.4	14.3
의복 및 모피제품	순이익	33.9	29.3	29.3	30.3	28.8	28.9	26.3	23.1	25.5	25.9	26.7	27.7	26.8	27.1
	영업이익	21.8	16.9	20.1	23.2	20.7	17.7	15.7	12.6	21.1	21.6	22.5	23.5	22.5	23.0
가방, 가죽 및 신발	순이익	29.1	21.8	24.5	28.1	26.2	29.3	20.0	19.0	21.5	27.4	23.5	24.8	23.1	24.0
	영업이익	14.9	13.7	16.9	18.8	17.8	14.9	11.4	8.9	16.8	18.1	18.7	22.5	19.0	19.5
목재 및 나무제품	순이익	23.6	25.9	19.2	19.7	28.3	19.9	23.4	17.6	17.9	17.3	18.1	19.4	21.8	21.7
	영업이익	12.3	9.7	10.0	22.8	17.4	6.9	6.1	7.0	13.6	14.4	10.9	17.1	21.4	20.5
펄프, 종이	순이익	29.0	23.4	23.5	24.3	26.3	20.8	23.5	17.9	19.8	19.2	20.3	21.5	21.7	22.0
	영업이익	12.4	10.9	11.3	15.7	14.0	8.8	8.2	10.1	13.2	14.7	15.3	16.4	15.5	15.7
출판, 인쇄	순이익	32.8	32.2	28.0	31.1	27.8	28.1	25.1	24.6	22.7	22.9	24.4	24.1	24.8	24.8
	영업이익	21.9	18.1	16.1	18.8	22.4	19.6	17.1	14.9	18.4	19.8	22.7	22.6	21.9	22.0
코크스, 석 유	순이익	33.0	28.3	26.5	32.0	23.3	24.1	18.3	24.5	22.8	23.7	23.0	21.9	26.9	25.9
	영업이익	12.5	14.0	16.0	19.4	16.1	12.4	3.8	12.0	14.5	19.1	18.2	22.7	27.7	26.5
화학물제 및 화합물	순이익	28.5	26.6	27.1	26.0	27.0	25.8	22.3	21.8	20.5	21.7	22.0	22.6	23.6	24.1
	영업이익	14.4	12.0	12.6	13.2	13.8	12.9	9.9	10.8	15.6	17.7	18.7	19.9	19.7	19.9
고무 및 플라스틱	순이익	24.7	22.8	23.4	19.3	21.5	21.2	17.9	17.8	20.2	19.3	21.0	19.8	21.2	21.0
	영업이익	14.5	15.0	11.2	15.8	12.7	14.2	9.5	8.5	15.1	13.9	16.7	17.1	16.7	16.3
비금속광 물제품	순이익	30.6	27.6	28.2	27.9	26.6	25.7	26.3	21.9	18.1	19.6	20.4	21.5	22.3	22.7
	영업이익	20.0	17.5	18.0	17.2	14.6	14.3	12.3	10.9	12.7	14.0	16.4	17.0	18.3	18.5

업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차 금속 제품	순이익	25.2	23.1	25.4	24.5	22.8	23.8	23.8	20.2	19.1	19.0	19.5	19.6	20.3	20.2
	영업이익	11.1	9.0	11.2	14.2	13.1	10.1	9.2	9.3	14.3	12.6	13.0	15.0	14.0	13.9
조립 금속 제품	순이익	25.3	23.7	25.4	25.0	27.6	24.2	22.6	19.3	18.4	20.8	20.8	20.8	22.0	21.0
	영업이익	14.3	13.3	16.1	15.3	15.4	14.2	13.3	10.1	13.8	15.9	17.5	17.2	18.5	17.5
기타 기계 및 장비	순이익	26.0	23.2	23.0	24.5	23.4	23.0	20.1	19.5	20.1	19.2	19.8	20.0	19.4	19.6
	영업이익	14.1	11.5	13.1	14.4	13.2	12.2	10.6	9.8	15.8	16.4	17.3	17.1	15.9	16.1
컴퓨터 및 사무기기	순이익	30.9	20.9	22.8	19.5	21.3	19.8	22.1	17.6	16.9	16.7	17.9	19.6	18.0	19.5
	영업이익	9.9	12.4	11.8	11.0	10.8	10.7	8.2	11.4	16.1	15.0	15.1	17.7	14.8	15.0
기타 전기 및 기계	순이익	22.1	23.3	23.3	22.3	22.0	20.2	20.0	18.8	17.7	20.3	20.5	19.9	21.2	21.5
	영업이익	13.9	13.2	13.3	14.6	13.3	12.4	10.1	10.9	14.2	17.6	17.9	17.1	17.6	17.7
전자 부품, 통신 장비	순이익	23.0	22.6	22.8	20.3	19.9	20.5	18.3	17.6	16.1	16.8	17.6	17.8	17.7	18.0
	영업이익	13.0	11.5	11.7	13.0	13.0	11.8	10.6	10.4	14.7	15.4	16.3	15.5	14.9	15.6
의류, 정밀 광학기기	순이익	27.1	22.1	20.5	22.8	24.9	21.1	19.3	19.0	17.6	19.5	19.3	18.9	24.1	23.9
	영업이익	17.6	13.3	15.0	12.4	14.7	11.2	8.9	10.0	15.2	17.8	18.4	15.4	16.2	17.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순이익	21.8	22.8	20.2	21.4	20.6	20.4	20.8	18.6	18.6	19.1	18.7	18.5	18.4	18.6
	영업이익	11.6	9.8	9.8	12.5	12.3	10.8	10.3	7.4	13.1	14.0	15.3	16.4	15.7	15.8
기타 운송 장비	순이익	27.7	23.8	25.0	28.4	20.6	20.5	20.7	22.5	21.5	19.5	19.0	19.7	18.8	19.0
	영업이익	12.5	13.4	12.8	19.6	14.3	13.0	10.6	10.9	14.2	15.8	15.0	15.8	14.8	15.0
가구 및 기타 제품	순이익	28.2	21.8	24.0	24.5	26.4	21.7	21.1	19.6	19.3	22.6	21.9	23.4	24.0	24.4
	영업이익	15.3	12.5	16.1	11.4	15.3	10.6	12.6	11.5	15.6	18.5	21.5	19.9	21.0	21.5

<부표 2> 산업별 법인세 부담 추이

(단위 %)

업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농업,임업	순이익	25.0	13.9	25.5	32.8	39.6	35.5	37.8	22.4	26.8	23.9	17.3	20.2	19.4	20.0
	영업이익	16.7	10.0	13.5	15.5	17.8	11.3	9.9	7.8	23.3	19.8	20.2	16.2	18.6	18.7
어업	순이익	32.6	25.5	34.3	29.8	27.5	30.4	32.2	18.7	25.0	28.4	25.6	21.5	22.5	22.7
	영업이익	11.4	9.2	15.4	19.3	16.5	20.3	24.1	12.0	19.4	18.9	14.7	11.0	16.0	16.2
광업	순이익	19.2	24.5	16.6	30.2	19.8	21.3	26.6	22.8	23.8	23.6	26.0	28.1	22.7	23.0
	영업이익	10.8	18.1	17.8	23.2	5.0	11.6	9.3	11.2	17.4	16.7	17.2	21.0	19.6	20.0
제조업	순이익	26.9	24.5	24.3	24.7	23.7	23.3	21.6	19.8	19.1	20.0	20.7	20.7	21.0	21.2
	영업이익	14.1	12.4	12.8	14.5	13.5	12.2	10.5	10.2	14.8	16.0	17.1	17.2	16.8	17.0
전기,가스	순이익	36.4	34.6	39.6	38.9	33.9	32.2	29.9	30.8	29.5	30.2	28.9	29.1	28.0	29.0
	영업이익	26.5	19.0	20.9	28.3	25.9	22.5	20.1	28.9	22.0	23.9	21.2	24.3	24.5	25.0
건설업	순이익	31.4	30.2	32.8	30.9	30.1	27.5	27.5	25.2	23.8	25.2	23.6	23.1	23.9	24.0
	영업이익	19.8	20.1	21.0	18.0	18.5	16.0	16.1	14.2	19.0	18.8	19.1	19.5	19.7	19.7
도소매업	순이익	34.0	33.3	32.1	31.9	29.8	27.6	26.2	24.8	27.5	28.0	28.3	28.6	28.5	28.6
	영업이익	23.3	18.7	21.6	21.8	20.9	16.9	15.1	15.3	25.0	25.3	25.1	26.0	24.7	24.8
숙박,음식	순이익	34.1	34.4	33.2	31.6	26.9	29.0	29.3	28.9	28.2	30.4	29.8	27.5	27.6	27.6
	영업이익	23.6	26.4	24.5	24.9	22.3	21.1	26.4	22.9	23.1	23.9	25.6	24.5	22.1	22.2
운수업	순이익	35.9	33.1	34.2	32.3	29.2	28.2	26.8	24.4	27.5	26.0	26.6	26.4	25.4	25.6
	영업이익	22.1	23.3	16.6	22.4	21.1	19.4	13.8	14.4	22.4	22.2	24.1	22.6	21.5	21.6
통신업	순이익	17.1	35.8	32.5	31.5	33.7	32.6	27.2	29.2	23.7	20.0	27.3	17.9	23.9	24.0
	영업이익	25.2	24.8	34.7	36.8	33.5	28.9	22.7	15.9	17.5	15.3	25.5	17.7	21.7	21.8
금융,보험	순이익	36.4	42.2	39.4	44.4	31.4	31.4	24.5	39.0	37.5	23.4	30.9	29.6	31.1	30.9
	영업이익	43.6	46.7	32.2	36.8	40.8	29.0	24.6	20.0	30.7	24.2	29.3	33.2	28.0	27.8
부동산,임대업	순이익	35.6	33.9	33.1	32.8	30.8	27.6	29.3	26.4	26.3	27.4	26.1	25.7	27.4	27.5
	영업이익	20.4	26.3	24.0	26.7	26.1	19.9	22.0	17.6	21.8	25.5	22.3	23.5	21.9	22.0
서비스사업	순이익	31.7	33.2	32.3	29.7	23.0	23.6	18.0	18.6	18.2	18.3	18.7	20.1	23.1	23.0
	영업이익	19.8	19.4	19.8	18.4	17.5	15.6	12.1	13.2	17.7	18.9	18.7	19.0	20.4	20.2
교육사업	순이익	32.6	39.3	27.6	34.4	34.1	31.0	30.6	27.3	30.5	30.1	30.5	29.9	29.4	29.6
	영업이익	31.4	29.6	21.3	32.3	28.5	33.5	25.8	18.9	28.6	29.1	29.5	29.9	29.3	29.4
오락,문화	순이익	33.6	35.9	35.9	33.6	33.6	33.0	30.4	25.2	25.0	27.1	25.5	26.0	25.4	25.6
	영업이익	31.7	24.2	30.9	36.7	26.6	33.9	28.9	17.5	25.5	25.0	24.9	24.0	23.7	23.8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경제학	학 번	20047321	과 정	박 사
성 명	한글: 조동민, 한문 : 曹 銅 敏, 영문 : Cho, Dong Min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우미아트빌 206동 1210호				
연락처	062-446-0413	E-MAIL	dmcho@kopti.re.kr		
논문제목	한글 :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어 : A Study on Tax Burden of Enterprise Influencing on Investment and Employment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 반대(   )

2007 년      2 월      일

저작자:                                  조 동 민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